

세법연구 16-05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2016.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범 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구 문 정 연 구 원

홍 성 희 공인회계사

목차

I. 서론	11
II.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과세현황	14
1.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4
가. 이자·배당소득	14
나. 주식의 자본이득	17
2. 금융소득 과세현황	18
가. 이자·배당소득	18
나. 주식의 자본이득	21
3.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	23
III. OECD 회원국의 이자소득	25
1. 이자소득금액	25
가. 이자소득세제의 적용대상 금액	25
나. 필요경비의 공제	26
2. 이자소득 과세제도	26
가. 종합과세	26
나. 분류과세	30
다. 분리과세	32
라. 비과세	35
마. 2가지 이상 과세제도의 병행	35

3. OECD 회원국의 이자소득 세부담 비교	36
IV.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41
1. 배당소득금액	41
가. 배당소득세제 적용대상 금액	41
나. 필요경비의 공제 등	42
2. 배당소득 과세제도	43
가. 종합과세	43
나. 분류과세	45
다. 분리과세	48
라. 비과세	50
마. 2가지 과세제도의 병행	50
3.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해소 방법	53
가. 명목이자비용공제	53
나. 부분과세	54
다. 임puted(Imputation)	56
라. 배당세액공제	58
마. 경감세율 적용(분류, 분리, 비과세)	58
4.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세부담 비교	59
가. 총세부담 비교분석	59
나. 이중과세 제거효과 비교분석	64
V. OECD 회원국의 주식 자본이득	68
1. 주식양도차익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금액	68
가. 과세대상 산정 방법	68
나. 자본이득세 적용대상 금액	70

다. 주식처분 손실의 상계 여부	72
2. 자본이득 과세제도	74
가. 자본이득세의 과세방식	74
나.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금액 조정	83
다.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과세대상 금액 또는 세율의 조정	85
라. 상장 여부에 따른 과세금액 조정	88
3. OECD 회원국의 자본이득 세부담 비교	89
가. 단기(6개월 미만) 보유 주식처분	90
나. 장기(1년 1일) 보유 주식처분	94
VI. 최근 금융소득세제 개편 국가들의 제도 변천 개요	98
1. 일본	98
2. 독일	100
3. 프랑스	102
4. 영국	103
5. 슬로베니아	106
VII. 요약 및 시사점	108
1. 요약	108
가. 이자소득	108
나. 배당소득	111
다. 주식 자본이득	114
라. 소결	118
2. 시사점	132
가. 조세 중립성	132
나. 과도한 비과세 및 저율의 분리과세 금융상품	133

다.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일률적 과세체계.....	135
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138
마. 소득구간별 세부담 비교.....	139
참고문헌.....	141

표목차

〈표 II-1〉 금융소득 과세체계	15
〈표 II-2〉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17
〈표 II-3〉 거주자의 2015년 금융소득 원천징수신고 현황.....	19
〈표 II-4〉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2015년 신고내역.....	21
〈표 II-5〉 거주자의 2015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22
〈표 III-1〉 예납적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원천징수세율.....	29
〈표 III-2〉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분류과세율.....	31
〈표 III-3〉 분리과세제도 채택 국가의 분리과세율.....	34
〈표 III-4〉 OECD 국가의 이자소득세 과세 현황 (2016년 12월 기준)	39
〈표 IV-1〉 예납적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원천징수세율.....	44
〈표 IV-2〉 국가별 분류과세 대상 소득.....	45
〈표 IV-3〉 핀란드의 배당소득 과세체계	46
〈표 IV-4〉 분류과세국가의 배당소득세율.....	47
〈표 IV-5〉 분리과세제도 채택 국가의 분리과세율.....	49
〈표 IV-6〉 적격배당요건.....	50
〈표 IV-7〉 일본의 배당소득 과세체계.....	52
〈표 IV-8〉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부분과세.....	55
〈표 IV-9〉 OECD 회원국의 과세제도 유형별 평균 총세부담률.....	61

〈표 IV-10〉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세부담 비교(2016년 12월 기준).....	62
〈표 IV-11〉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효과 비교.....	67
〈표 V-1〉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자본이득 분류과세율.....	78
〈표 V-2〉 분리과세제도 채택 국가의 자본이득 분리과세율.....	80
〈표 V-3〉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금액 조정.....	86
〈표 V-4〉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자본이득세율의 범위	87
〈표 V-5〉 OECD 회원국의 과세제도 유형별 평균 총세부담률 (단기 보유).....	91
〈표 V-6〉 2016년 OECD 국가의 단기 보유한 주식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 현황 (2016년 12월 기준)	92
〈표 V-7〉 OECD 회원국의 과세제도 유형별 평균 총세부담률 (장기 보유).....	95
〈표 V-8〉 2016년 OECD 국가의 장기 보유한 주식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 현황 (2016년 12월 기준)	96
〈표 VI-1〉 일본의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	100
〈표 VI-2〉 독일의 2008년 세법개정 전·후 자본소득 과세방법.....	101
〈표 VI-3〉 프랑스의 2013년 세법개정 전·후 자본소득 과세방법.....	102
〈표 VI-4〉 프랑스의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공제율.....	103
〈표 VI-5〉 영국의 2016년 세법개정 전·후 배당소득세율.....	105
〈표 VII-1〉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분류.....	120
〈표 VII-2〉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요약.....	121
〈표 VII-3〉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개인 소득세율.....	129
〈표 VII-4〉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과 주식 자본이득세율의 차이.....	129

그림목차

[그림 III-1] OECD 회원국의 이자소득 총세부담률.....	37
[그림 IV-1]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총세부담률.....	60
[그림 IV-2]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제거효과	64
[그림 V-1] OECD 회원국의 단기 주식 자본이득 총세부담률.....	90
[그림 V-2] OECD 회원국의 장기 주식 자본이득 총세부담률.....	94
[그림 VII-1]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유형별 세부담(총세부담률).....	130
[그림 VII-2]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유형별 개인 소득세율.....	131

I. 서론

- 우리나라는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며 현재 1인당 연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으로 부르고 있음

- 주식 자본이득의 경우 현재 상장법인 대주주 보유 주식, 비상장주식 등 법에서 열거한 특정 주식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과세되고 있음
 - 1991년 모든 종류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작

- 금융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등과 구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상반된 주장 존재¹⁾
 - 금융소득은 국제적 이동성이 높아 국내에서의 세부담이 높은 경우 자본의 국외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낮은 세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
 - 고액 자산가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포기되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은 세원 범위 확대에 따른 충분한 세수 확보를 이용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소 가능²⁾
 - 반면,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증과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을 도모하는 방법이라는 주장

1) 오윤·임동원(2013), pp. 83~84

2) 오윤·문성훈(2015), p. 86

- 주식의 자본이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조세의 형평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세대상 범위 확대³⁾
 - 2013. 2. 개정: 지분율 요건(3%→2%) 및 금액 요건(100억원→50억원) 변경
 - 2016. 2. 개정: 지분율 요건(2%→1%) 및 금액 요건(50억원→25억원) 변경
 - 2017. 2. 개정: 금액 요건(25억원→15억원, 2020.4. 이후는 10억원)으로 변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OECD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자·배당 및 주식 자본이득의 과세제도 및 개략적인 세부담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과세제도 개편 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Harding(2013)에서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비교하고 개략적인 세부담 비교연구를 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본자료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검토함
 - 이자소득: 거주자의 일반적인 내국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 배당소득: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과 무관하게 수령하는 현금배당
 - 주식 자본이득: 거주자가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자본이득

- 본 연구에서는 명목세율을 이용하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 부담을 비교하였으므로 국가별 단순 세부담 비교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
 - 명목세율은 국세(2016년 12월 31일 <https://online.ibfd.org/> 검색 기준)를 의미하며 그 외의 지방세, 부가세(surtax) 및 부담금 등은 포함하지 않음

3)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기준 과세대상 범위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함

○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과세면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

□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의 비교가 좀 더 정확한 세부담 비교에 해당할 것이나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안인 명목세율 비교분석을 통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최고 세부담 수준 및 각 국가의 금융소득 유형별 세부담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사유로 선행연구인 Harding(2013)에서도 최고 명목 소득세 부담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추정됨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 I 장을 포함하여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II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문제점을 살펴 봄

○ 제III장부터 제V장에 걸쳐 OECD 회원국의 이자·배당·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및 세부담을 분석

○ 제VI장에서는 최근 금융소득세제를 개편한 국가들의 변천 개요를 살펴봄

○ 마지막으로 제VII장에서 OECD 회원국의 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II.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과세현황

1.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총 8가지로 분류하고 과세대상 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이자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등을 의미함⁴⁾
 - 배당소득이란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액 등을 의미함⁵⁾
 - 양도소득이란 토지, 건물, 주식 등 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⁶⁾

-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
 - 이하 우리나라의 이자·배당소득을 총칭할 때에 ‘금융소득’이라는 용어 사용

가. 이자·배당소득

1) 개관

4) 「소득세법」 제16조

5) 「소득세법」 제17조

6) 「소득세법」 제94조

-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1인당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분리과세)

〈표 II-1〉 금융소득 과세체계

구분	내용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 ① 1인당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② 1인당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단,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은 종합과세

출처: 국세청(2016), pp. 130~131

2) 금융소득 수취시점 : 예납적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소득의 수취시점에 소득세 원천징수

○ 2016년 현재 기본 원천징수세율은 14%임

- 19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시 기준금액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⁷⁾
- 1997년에는 기본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최저세율인 10%로 인하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사실상 폐지를 계획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음⁸⁾
- 2005년 소득세 기본세율을 구간별 1%p 인하함과 동시에 기본 원천징수세율 또한 15%에서 14%로 1%p 인하⁹⁾

7) 조계근(1996), pp. 22~23

8) 상계서, pp. 22~23

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6275&lsId=&efYd=2005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7.1.26.)

3) 종합소득세액 확정시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 1인당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익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금융소득의 수취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결정세액 계산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인정

-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적용 불가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소득계층의 종합과세 선택 불가능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분리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비교과세제도’를 두고 있음¹⁰⁾
 -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14%세율의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는 반면, 종합과세되는 경우 각종 소득공제 및 누진체계인 종합소득세율 등으로 인해 분리과세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어지는 경우 발생 가능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종합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과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금융소득에 대하여 최소한 예납적 원천징수세액 부담 목적

-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이후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부담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에 대해 배당액의 111/100을 금융소득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배당가산액(배당액의 11/100)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10) 국세청(2016), pp. 138~130

나. 주식의 자본이득

- 우리나라는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법에서 열거한 특정 주식의 자본이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우리나라는 주식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의 일부로 보고 있음
 - 2016년 12월 말 현재 국내주식으로는 비상장주식,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한하여 과세¹¹⁾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변경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2016년 12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1% 초과하여 보유하였거나 시가 총액 25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였던 주주의 양도차익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¹²⁾

〈표 II-2〉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상장시장	코넥스시장 ¹⁾
1999.1.1.~	5%	5%	-
2000.1.1.~	3% 또는 100억원	3% 또는 100억원	-
2005.8.5.~	3% 또는 100억원	5% 또는 50억원	-
2013.2.15.~	2% 또는 50억원	4% 또는 40억원	-
2013.6.28.~	2% 또는 50억원	4% 또는 40억원	4% 또는 10억원
2016.4.1.~	1% 또는 25억원	2% 또는 20억원	4% 또는 10억원
2018.4.1.~	1% 또는 15억원	2% 또는 15억원	4% 또는 10억원

주: 1)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1일에 개장
 출처: 기획재정부·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5), p. 67, 2015. 2016년 이후 개정사항 저자 업데이트

11)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을 전제로 검토. 이하 동일
 12)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하며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02년 이후 큰 변동이 없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상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 양도자의 대주주 해당 여부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
 -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원칙적으로 20%임
 - 다만, 소액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에 대하여는 3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2. 금융소득 과세현황

가. 이자·배당소득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의하면, 2015년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2.18조원이고 배당소득 잠정치는 17.57조원으로 가계 등의 금융소득 잠정치는 49.75조원임
- 한편,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신고된 금융소득금액은 총 45.11조원임
 - 이자소득 29.07조원, 배당소득 16.04조원
 - 이자소득이 배당소득의 약 2배
- 금융소득지급신고액 중 '일반세율 일반과세'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이자소득의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비율이 높은 편임
 - 총 이자소득·배당소득 대비 '일반세율 일반과세' 비중은 이자소득 58.9%, 배당소득 85.5%이며, 비과세 비중은 이자소득 29.18%, 배당소득 10.67%임
 -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은 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의 약 5배에 달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소득세 평균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9.5%와 11.8%임¹³⁾

〈표 II-3〉 거주자의 2015년 금융소득 원천징수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지급액	원천징수소득세액	대상 이자·배당소득 /총지급액
이자소득	29,070,225	2,747,850	100
비과세	8,482,360	-	29.179
세금우대 분리과세	2,483,805	214,518	8.544
일반세율 분리과세	547,223	45,554	1.882
일반세율 일반과세	17,130,233	2,384,355	58.927
비영업대금의 이자	425,466	102,954	1.464
비실명소득	1,128	469	0.004
배당소득	16,041,476	1,900,705	100
비과세	1,711,453	-	10.669
출자공동사업자	14,488	1,788	0.090
세금우대	62,182	7,312	0.388
장기보유주식 조합배당 등	60,556	3,161	0.377
일반세율 분리과세	480,353	55,709	2.994
일반세율 일반과세	13,710,939	1,831,689	85.472
비실명소득	1,505	1,046	0.009

주: 1. 해당연도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실적을 집계하여 작성된 자료로 동일 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두 번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계상됨
 2. 일반세율 일반과세란 대상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의미
 출처: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4-1-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 신고 현황

13) 유형별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총지급액으로 나눈 값임. 우리나라의 일반적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나, 비과세소득, 저율 및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희석효과로 인하여 평균 원천징수세율은 14%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 201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총 111,047명이고 이들이 신고한 이자소득금액은 약 2.5조원, 배당소득금액은 약 11.14조원임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전체 납세인원(6,187,254명)의 약 1.8%임
 - 전체 이자소득의 약 8.6%, 배당소득의 약 69.4%가 종합과세되고 있음¹⁴⁾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총소득금액 중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46.1%이며 납세자의 금융소득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임
 -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의 평균 비중이 2.9%인 데 반하여 금융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평균 비중은 74.9%임
 - 신고자 기준으로 보면, 금융소득규모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인 자가 전체 신고자의 50%를 초과함
 - 그러나 전체 금융소득 중 50% 이상이 전체 신고자 중 3.31%를 차지하는 금융소득규모 5억원 초과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 201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82%이며, 금융소득규모가 클수록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금융소득규모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보다 이자소득의 비중이 큼
 - 그러나 금융소득규모가 6천만원~8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 평균 비중이 72%이며, 금융소득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배당소득 평균 비중은 91%임

14) <표 II-3>에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의 이자·배당금액을 2015년 기준 거주자의 총 이자·배당금액으로 가정하고 계산된 숫자로, 국외 원천이자·배당소득, 이중계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경우 실제 종합과세 비율은 상이할 수 있음

〈표 II-4〉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2015년 신고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금융소득 규모	신고인원	총소득금액	금융소득		그 외	금융소 득/총소 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 이하	1,316	157,527	2,593	1,936	152,998	2.9
3천만 이하	40,925	4,571,708	506,570	475,248	3,589,890	21.5
4천만 이하	18,075	2,493,333	260,370	362,015	1,870,948	25.0
4.6천만 이하	6,906	1,117,283	108,737	186,625	821,921	26.4
6천만 이하	10,266	1,843,793	183,312	355,206	1,305,275	29.2
8천만 이하	9,108	1,813,655	174,421	453,306	1,185,928	34.6
8.8천만 이하	2,483	595,444	52,157	156,313	386,974	35.0
1억 이하	2,461	649,596	61,124	169,946	418,526	35.6
2억 이하	9,890	3,395,095	282,741	1,078,472	2,033,882	40.1
3억 이하	3,315	1,685,837	128,208	677,934	879,695	47.8
5억 이하	2,626	1,974,901	140,175	863,691	971,035	50.8
5억 초과	3,676	9,314,712	616,363	6,356,460	2,341,889	74.9
합계	111,047	29,612,886	2,516,772	11,137,153	15,958,961	46.1

출처: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3-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나. 주식의 자본이득

□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
식의 양도가액은 총 21.37조원, 양도차익은 총 15.6조원임¹⁵⁾

○ 주식 양도차익의 실효세율은 약 13.6%임¹⁶⁾

15) 2016년 국세통계연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과 확정신고 현황의 단순합계임

16) 각 세율별 양도차익 합계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의 단순평균값에 의함

- 우리나라 개인의 2015년 총 주식 양도가액(1,502.29조원)¹⁷⁾의 약 1.4%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표 II-5〉 거주자의 2015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총자산건수	총양도가액	총양도차익	1건당 양도차익 ¹⁾
상장주식	4,225	7,362,610	5,538,867	1,311
중소기업(10%)	1,864	2,242,892	1,697,005	910
비중소기업(20%)	2,023	4,532,134	3,739,363	848
비중소기업(30%)	338	587,584	102,499	303
비상장주식	38,486	14,008,682	10,057,641	261
중소기업(10%)	28,485	10,602,029	8,416,540	295
비중소기업(20%)	9,987	3,368,685	1,633,270	164
비중소기업(30%)	14	37,968	7,831	559
합계	42,711	21,371,292	15,596,508	365

주: 1) 1건당 양도차익은 비교목적으로 계산된 값으로 총양도차익을 총 자산건수로 나눈 값임
출처: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5-1-8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양도가액, 적용세율), 5-2-7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양도가액, 적용세율)

- 이 중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총 7.36조원, 양도차익은 총 5.54조원임
- 2015년 기준 전체 상장주식 양도가액(1,488.29조원)의 약 0.49%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음
- 비상장주식의 신고된 총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은 각각 14조원, 10조원임
- 상장주식과 비교하면 과세대상 전체 양도건수는 약 9배이지만, 과세되는 전체 양도차익은 약 2배임

17) 상장주식 양도가액[한국거래소의 투자자별매매동향(<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0102>, 검색일자: 2017.1.6)에서 2015년 한해 동안 개인의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협회등록시장, 코넥스시장) 매도거래량의 합계]과 비상장주식 양도가액[2016년 국세통계연도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합계]의 합계

-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단기 주식양도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의 1건당 양도차익 평균이 비상장주식에 비하여 높음

3.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¹⁸⁾

- 동일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도 보유소득과 처분소득에 대하여 과세체계를 달리하여 세부담에 있어 현격한 차이 발생
 -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고, 주식의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 (형평성 측면) 과세체계가 비증립적이어서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저해
특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효율성 측면) 조세차익을 위한 투자전략이 가능하여 효율성 저해
- 과도한 비과세 및 저율의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존재
 - 소득세 과세기반의 침식이 심각함
 - 과도한 비과세 금융상품의 존재로 수직적 형평성 달성 목적으로 도입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 의문
 - 고액자산가들의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한 세부담 회피 가능
-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조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움
 - 유사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높은 납세협력비용 유발
-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일률적 과세체계
 - 기준금액 이하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

18) 홍범교·이상엽(2013), pp. 33~43; 김진수(2004), pp. 157~159을 참고하여 정리

- 2천만원 이하의 다른 소득은 6~15%¹⁹⁾의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4%의 세율 적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부담세액이 누진적이지 않아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저해
 - 예를 들어, 납세자에게 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로스업 효과 등으로 인해 배당금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세율은 14%임²⁰⁾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음
 - 법인세율은 10~22%의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배당가산액은 일률적으로 10% 법인세율에 맞추어져 있음

19)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20) 2016년 12월 31일 기준 세율 적용, 인적공제(1인 150만원)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된 계산

Ⅲ. OECD 회원국의 이자소득²¹⁾

1. 이자소득금액

가. 이자소득세제의 적용대상 금액

-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은 지급된 이자액을 기준으로 그 전부나 일부를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으로 함²²⁾
- 다만 네덜란드는 지급된 이자금액이 아닌 투자자산의 시가에 법정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에 과세함
 - 매년 1월 1일 결정되는 투자자산의 시가에 4%의 연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세를 계산함
 - 저금리를 반영하여 2017년부터는 일괄적인 4%의 연투자수익률이 아닌 투자금액 별로 구간을 달리하여 2.9~5.5%의 연투자수익률을 적용할 예정임
 - 위와 같이 추정된 금융소득에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기준 거주자의 순자산에 1.2%의 세율로 과세된 것과 같은 결과임
- 한편 수령액에 과세 시 이자 전액에 과세하는 경우, 이자 전액이 과세대상이나 그 중 일부를 아예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지 않는 범위 초과 시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21) 본 장의 OECD 회원국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 IBFD(<https://online.ibfd.org/>)를 인용 및 참조하여 작성함.

22) Harding, 전계서, pp. 22~23.

- OECD 회원국 중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의 일부를 과세하지 않음
 - 벨기에는 보통예금계좌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1,880유로까지 과세하지 않음²³⁾
 - 아이슬란드는 이자소득 일반에 대하여 125,000크로네까지 과세하지 않음²⁴⁾
 - 영국은 이자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보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예금소득 중 5,000파운드까지는 영세율을 적용함
 - 룩셈부르크는 은행예치금에 지급된 이자소득을 250유로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전액에 과세함²⁵⁾

나. 필요경비의 공제

- 이자소득세 적용대상 금액 산정 시 독일은 이자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된 이자금액에서 공제함

2. 이자소득 과세제도

- OECD 회원국의 개인 납세자의 금융기관 예치금에 지급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비과세, 혼합형 과세로 구분 가능함
 - 혼합형 과세는 납세자가 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 가능함

가. 종합과세

- 종합과세제도란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단일 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함²⁶⁾

23) IBFD, CIR/WIB § 21(5).

24) IBFD, TSKL § 66.

25) IBFD, LIR § 146(3).

- OECD 회원국은 대체로 한계세율을 적용하나 노르웨이는 단일세율을 적용함
미국을 예로 들면 <표 III-4>에서 이자소득을 100으로 보면 그 전액을 경상소득에
합산하여 최고세율 39.6%를 적용 시 39.6%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함
 - 한편 영국은 이자소득을 저축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구분하지만 세율 적용 시 다른 소
득과 합산하여 각 소득이 속한 세율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함²⁷⁾
 - 비저축소득(근로소득), 저축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 OECD 회원국 중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하여 16개국임
-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²⁸⁾ 스위스, 영국, 미국은 중
합과세제도만을 적용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멕시코, 포르투갈은 분리과세
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2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국가의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기
로 함
- 일반적으로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면서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은 추
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시 이자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과다징수된 기납부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음²⁹⁾
- 스위스는 이자지급기관이 원천징수액을 관계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납세
의무자는 추후 이자소득 신고 시 과다 징수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³⁰⁾

26) 심상동(2016), p. 24.

27) 전병목·이승식(2006), p. 21.

28) 노르웨이는 이원적 조세제도(dual tax base system)을 채택하여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일반
소득과 개인소득으로 구분한다. 일반소득에는 모든 카테고리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시
각종 비용과 손실이 공제가능하다. 노르웨이에서는 이자소득은 이러한 일반소득에 포함되므로 중
합과세로 분류한다.

29) 임승순(2015), p. 494 참조.

30) IBFD; 임승순, 상계서, pp. 496~500 참조.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호주, 캐나다 등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않으나,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은 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미국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보조적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제도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함³¹⁾
- 예금주가 과세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납세자식별번호(TIN)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미연방 국세청이 과세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주가 제공한 납세자식별번호의 오류를 통지한 경우
-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표 III-1〉 참고)

31) 보조적 원천징수제도는 이자, 배당, 주식의 자본이득 모두에 적용됨

〈표 III-1〉 예납적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원천징수세율

(단위: %)

국가	예납적 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세율
벨기에	27	25, 30, 40, 45, 50
에스토니아	20	20
프랑스	24	0, 14, 30, 41, 45
독일	25	0, 14, 23.97, 42, 45
대한민국	14	6, 15, 24, 35, 38
멕시코	0.50(2016), 0.60(2017)	1.92, 6.40, 10.88, 16.00, 17.92, 21.36, ... , 34, 35
뉴질랜드	10.5, 17.5, 30, 33	10.5, 17.5, 30, 33
포르투갈	28	14.5, 28.5, 37, 45, 48
스위스	35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1.5
영국	20	20, 40, 45

주: 1. 호주는 원칙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수령자가 납세번호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소득 최고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함
 2. 멕시코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며 분리과세하는 경우는 〈표 III-4〉의 주2)에 나옴
 3. 프랑스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할 때에 사회보험료(15.5%)도 같이 징수하여 실효세율은 39.5%로 나타남
 출처: IBFD(www.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표 III-1〉에서 뉴질랜드는 예납적 원천징수세율을 납세자의 종합소득 한계세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³²⁾
 - 이는 원천징수 세금이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에 근접한 세율로 부과되도록 하여, 조세순응 및 조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납적 원천징수세율 중 10.5%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14,000달러 이하 소득을 합리적으로 기대(reasonable expectation)할 수 있어야 하며,³³⁾

32) <http://www.ird.govt.nz/technical-tax/legislation/2009/2009-63/2009-63-taxation-act-2009/2009-63-resident-withholding/>(검색일자: 2017. 3. 10.)

-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계좌 종류에 따라 17.5% 또는 33%로 함³⁴⁾

나. 분류과세

- 분류과세제도란 납세자의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함³⁵⁾
 -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은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스페인은 누진세율(19%, 21%, 23%)로 과세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 총 4개국임
 -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모두 분류과세제도만을 적용하고 있음
 - 분류과세제도를 종합과세제도나 분리과세제도와 병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경우 배당소득, 주식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그 발생원천을 동일하게 보아 합산하여 분류과세함
 -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이자소득을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차익과 합산하여 분류과세함
 - 아이슬란드는 이자소득을 투자소득으로 구성된 카테고리C(Category C)에 포함시켜 분류과세
 - 스페인은 저축소득(savings income)에 포함시켜 분류과세
 - 스웨덴은 자본에서 발생한 소득(income from capital)에 포함시켜 분류과세
 - 네덜란드는 이자소득을 Box 3 소득으로 분류하여 주식양도차익을 제외하고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분류과세함

33) <http://www.ird.govt.nz/rwt/receiving/how-much/#02>(검색일자: 2017. 03. 10.)

34) 뉴질랜드 국세청, 상계서.

35) 심상동, 전계서, p. 24.

- Box 3 소득은 저축과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income from savings and investments)으로 구성됨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2개국은 종합소득세율(최저)보다 낮게, 1개국은 종합소득세율의 범주 내에서, 1개국은 최고 종합소득세율보다 높게 분류과세함
- <표 III-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최저)보다 낮은 세율로 분류과세
- 스페인은 총 5단계로 구성된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의 1단계부터 2단계 전까지의 세율의 범주 내에서 분류과세
- 스웨덴은 종합소득세율(최고)보다 5%p 높은 세율로 분류과세

<표 III-2>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분류과세율

(단위: %)

국가	분류과세율	종합소득세율
아이슬란드	20	22.68, 23.90, 31.8
네덜란드	30	36.55, 40.40, 40.40, 52
스페인	19, 21, 23	19, 24, 30, 37, 45
스웨덴	30	0, 20, 25

출처: IBFD(www.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네덜란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 3개국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분류과세의 경우 동 세율로 복수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최저세율로 원천징수함(스페인 19%)

다. 분리과세

- 분리과세제도가 합은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 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제도를 말함³⁶⁾
 - 분리과세하는 경우 이자 지급기관(원천징수의무자)이 이자소득세를 완납적 원천징수하므로 추후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산정 시 이자소득을 고려하지 않음³⁷⁾
 - 핀란드를 예로 들면 <표 III-3>에서 은행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100이라면 이에 대해 3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할 때 총세부담은 최종적으로 30임

- OECD 회원국 중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등 총 20개국임
 -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분리과세제도만 적용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대한민국, 멕시코, 포르투갈은 분리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OECD 회원국의 분리과세율은 <표 III-3>와 같이 일반적으로 단일세율의 형태를 가지며 종합과세세율 최저 1~2 세율 구간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됨
 -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종합소득세율이 단일세율인 경우에는 같은 세율로, 복수세율인 경우 최저 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종합소득세율의 최저에서 두 번째 세율과 유사한 수준

- 분리과세율이 종합과세 누진세율의 최저에서 두 번째 세율보다 높은 국가는 총 4개국이며 그 중 아일랜드는 종합과세 최고세율보다도 1%p 높은 세율로 과세함

36) 심상동, 전게서, p. 24.

37) Harding, 전게서; 임승순, 전게서, p. 494 참조.

- 룩셈부르크는 19단계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며 그 중 최저에서 세 번째 세율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함
 - 핀란드는 4단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며 그 중 최고 세율과 유사한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독일은 5단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며 그 중 중간 세율과 유사한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하도록 한 국가는 총 4개국으로 이 중 2개국은 종합과세 한계세율의 최저 두 번째 세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은 종합과세율의 최저 두 번째 세율과 독일은 종합과세율의 최저 세 번째 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리과세
 - 벨기에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최저 종합과세율보다 10%p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 가능함
 - 일반적으로 종합과세가 선택 가능한 경우는 분리과세율이 납세자가 속한 종합과세율보다 높은 경우임

〈표 III-3〉 분리과세제도 채택 국가의 분리과세율

(단위: %)

국가	분리과세율	종합소득세율	종합과세 선택가능 여부
오스트리아	25	0, 25, 35, 42, 48, 50, 55	○
벨기에	15	25, 30, 40, 45, 50	○ ¹⁾
체코	15	15	×
핀란드	30	6.5, 17.5, 21.5, 31.75	×
독일	25	0, 14, 23.97, 42, 45	○
그리스	15	22, 29, 37, 45	×
헝가리	15	15	×
아일랜드	41	20, 40	×
이스라엘	25	31, 34, 48	×
이탈리아	26	23, 27, 38, 41, 43	×
일본	15	5, 10, 20, 23, 33, 40, 45	×
대한민국	14	6, 15, 24, 35, 38	×
라트비아	10	23	×
룩셈부르크	10	0, 8, 10, 12, 14, 16, ... 40	×
멕시코 ²⁾	0.60	1.92, 6.40, ... 35	×
폴란드	19	0, 18, 32	×
포르투갈	28	14.5, 28.5, 37, 45, 48	○
슬로바키아	19	19, 25	×
슬로베니아	25	16, 27, 41, 50	×
터키 ³⁾	10, 12, 15	15, 20, 27, 35	×

주: 1) 벨기에는 보통예금계좌로부터 발생한 이자 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7%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저종합과세율보다 2%p 높은 경우임

2) 멕시코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이자소득에 한정되고 동 소득이 1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함

3) 터키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복수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되며 계좌 만기일 6개월까지는 15%, 이를 초과하여 1년까지는 12%, 1년을 초과하면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출처: IBFD(www.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라. 비과세

- OECD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와 멕시코는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 에스토니아는 이자소득 지급금융기관이나 그 고정사업장이 에스토니아를 포함 유럽 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소재하는 경우 비과세함
 - 멕시코는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최소 근로소득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하지 않음

마. 2가지 이상 과세제도의 병행

1) 종합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의 병행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독일, 포르투갈은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분리과세 시 세부담보다 종합과세 시 세부담이 적은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벨기에에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보통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시 최저 종합과세율보다도 10%p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함
-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소득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함
 - 우리나라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 초과하는 경

우 종합과세

- 멕시코는 납세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에 한정되는 경우 10만페소까지는 분리과세,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 다만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최소 근로소득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하지 않음

2) 종합과세제도와 비과세제도와 병행

- 에스토니아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고정사업장이 EEA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

3) 분류과세제도와 다른 과세제도와 병행

-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 또는 분리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3. OECD 회원국의 이자소득 세부담 비교³⁸⁾

- 본 장에서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예치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OECD 회원국이 부과하는 이자소득세 부담을 비교함
 - OECD 회원국이 동일한 경제상황에 있다는 가정하에 납세자가 이자소득 100을 벌여 각국의 과세제도에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함
 - 세후수익 전액을 납세자의 개인이자소득으로 가정함

38)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국세를 중심으로 명목세율을 이용하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 부담을 비교하였으므로 국가별 단순 세부담 비교에 있어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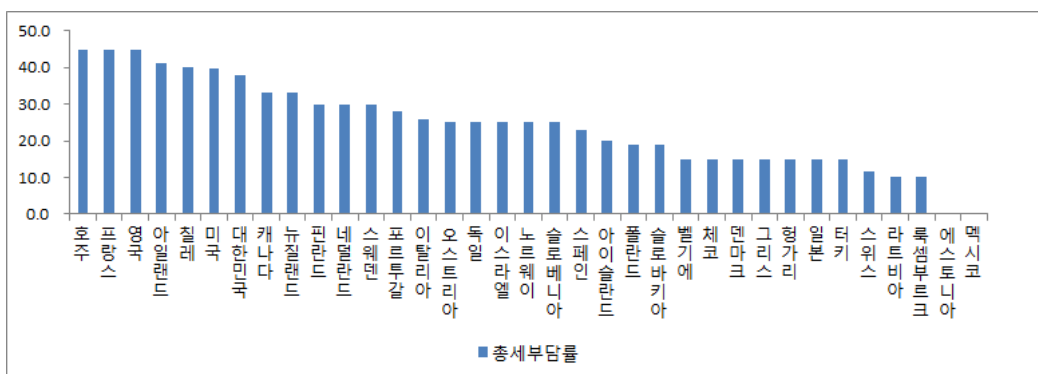
- OECD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율은 명목세율(국세)로 하며 각국 고소득층 납세자의 2016년도 세부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정함
 - 납세자에게 종합·분류·분리과세로 복수비례세율 적용 시 최고세율을 적용함
 - 이자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세부담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각종 지방세 및 부가세의 세율은 고려하지 않음

-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OECD 평균 총세부담률은 24.17%이며, 본 연구는 거주자의 일반적인 내국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 세부담률은 100% 개인소득세 비중임

- OECD 회원국 중 총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45%), 프랑스(45%), 영국(45%)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0%), 멕시코(0%)임([그림 III-1]참조)
 - 총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호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41%), 칠레(40%), 미국(39.6%), 대한민국(38%) 등이 있음
 - 총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에스토니아, 멕시코, 룩셈부르크(10%), 라트비아(10%), 스위스(11.5%), 터키(15%), 일본(15%) 등이 있음

[그림 III-1] OECD 회원국의 이자소득 총세부담률

(단위: %)



출처: IBFD(www.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종합과세하는 경우 38%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임
 -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OECD 평균보다 13.83%p 높음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분리과세하는 경우 14%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임
 -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OECD 평균보다 10.17%p 낮음

- OECD 회원국을 과세제도별로 구분하여 평균 총세부담률을 비교하면 종합과세의 총세부담률(36%)이 가장 높고 분류과세(25.7%), 분리과세(21.8%), 비과세 순으로 낮아짐

- 한편 종합·분류·분리과세제도에 복수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총세부담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남

〈표 III-4〉 OECD 국가의 이자소득세 과세 현황 (2016년 12월 기준)

국가	과세방식	이자소득	소득세율	소득세액	원천징수세율	원천세액	세후소득	총세부담률
호주	종합과세	100	45%	45			55	45%
오스트리아	분리과세	100			25%	25	75	25%
벨기에	분리과세	100			15%	15	85	15%
캐나다	종합과세	100	33%	33			67	33%
칠레	종합과세	100	40%	40			60	40%
체코	분리과세	100			15%	15	85	15%
덴마크	종합과세	100	15%	15			85	15%
에스토니아	비과세	100					100	0%
핀란드	분리과세	100			30%	30	70	30%
프랑스	종합과세	100	45%	45			55	45%
독일	분리과세	100			25%	25	75	25%
그리스	분리과세	100			15%	15	85	15%
헝가리	분리과세	100			15%	15	85	15%
아이슬란드	분류과세	100	20%	20			80	20%
아일랜드	분리과세	100			41%	41	59	41%
이스라엘	분리과세	100			25%	25	75	25%
이탈리아	분리과세	100			26%	26	74	26%
일본	분리과세	100			15%	15	85	15%
대한민국	종합과세	100	38%	38			62	38%

〈표 III-4〉의 계속

국가	과세방식	이자소득	소득세율	소득세액	원천징수세율	원천세액	세후소득	총세부담률
라트비아	분리과세	100			10%	10	90	10%
룩셈부르크	분리과세	100			10%	10	90	10%
멕시코	비과세	100					0	0
네덜란드	금융소득추징과세, 분류과세	100	30%	30			70	30%
뉴질랜드	종합과세	100	33%	33			67	33%
노르웨이	종합과세	100	25%	25			75	25%
폴란드	분리과세	100			19%	19	81	19%
포르투갈	분리과세	100			28%	28	72	28%
슬로바키아	분리과세	100			19%	19	81	19%
슬로베니아	분리과세	100			25%	25	75	25%
스페인	분류과세	100	23%	23			77	23%
스웨덴	분류과세	100	30%	30			70	30%
스위스	종합과세	100	11.5%	11.5			88.5	11.5%
터키	분리과세	100			15%	15	85	15%
영국	종합과세	100	45%	45			55	45%
미국	종합과세	100	39.6%	39.6			60.4	39.6%
OECD 평균								24.17%

출처: IBFD(www.ibfd.org); Harding(2013)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IV.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1. 배당소득금액³⁹⁾

가. 배당소득세제 적용대상 금액

- OECD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령한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계산함
- 다만, 네덜란드는 일반 주주가 사업과 무관하게 수령한 배당에 대해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 수령액이 아닌 투자자산의 시가에 법으로 정하는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제를 적용
 - 일반 주주의 사업 관련성이 없는 배당소득은 매년 1월 1일 결정되는 투자자산의 시가에 4%의 연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계산
 - 한편, 사업용 자산인 주식을 통해 수령한 배당, 지배주주가 수령한 배당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배당세제를 적용함
 - 지배주주라 함은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의미함
- 또한 노르웨이는 주주배당과세모델(the shareholder model)을 도입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무위험 투자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제를 적용함
 - 실제 수령한 배당금 중 개별 주식의 취득가액에 당연이자율(shielding interest

39)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은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 IBFD의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를 참고하여 작성

rate)을 곱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1.15배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과세

- 당연이자율은 3개월 국채 세후 이자율을 기준으로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에서 익년 1월에 고시하며 2015년의 경우 0.6%임
- 2016년 배당 소득세율이 인하(27→25%)됨에 따라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의 세부담 격차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무위험투자수익 초과분에 1.15배를 가중하여 배당소득세 계산⁴⁰⁾

- 당해 연도에 수령한 배당금이 당연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그다음 연도 이후 발생하는 해당 주식의 배당금 또는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나. 필요경비의 공제 등

- 분리과세를 선택한 국가는 필요경비의 공제 없이 실제 수령한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계산함
-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를 채택한 국가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음
 - 종합과세국가인 호주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 투자계좌 관리비용(Management fee), 투자계좌 관리를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예. 출장비, 전문저널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공제 가능⁴¹⁾
 - 일본은 종합과세방식 및 신고분리과세방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을 공제함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네덜란드의 경우 배당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

40) 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52300872ef08449b86e422d87f7726bd/chapter_1_prop1.pdf pp. 3~4(검색일자: 2017.3.6.)

41)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Interest,-dividend-and-other-investment-income-deductions/#Dividendandshareincomeexpenses1> (검색일자: 2016.12.26.)

하여 공제함

○ 반면, 종합과세국가인 아일랜드는 배당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을 공제하지 않음

□ 한편,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배당금 중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

프랑스는 배당금에 대하여 1인당 1,525유로(부부의 경우 3,050유로)의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룩셈부르크는 배당금에 대하여 1인당 1,500유로(부부의 경우 3,000유로)의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2. 배당소득 과세제도⁴²⁾

가. 종합과세

□ OECD 회원국 중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하여 총 19개국임

○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종합과세제도만을 적용하고 있음⁴³⁾

○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터키는 분리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미국은 분류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2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국가의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함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호주, 캐나다 등 7개국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

42)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 IBFD의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를 참고하여 작성

43) 멕시코는 종합과세국가이나, 2014년부터 배당금의 10%를 분리과세방식으로 추가 과세함

만, 그 외의 국가는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미국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호주와 미국은 원칙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수령자가 납세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최고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함
 - 이탈리아는 지배주주의 배당소득에 한하여 종합과세하고 있으므로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원 확보의 애로사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⁴⁴⁾

〈표 IV-1〉 예납적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원천징수세율

(단위: %)

국가	예납적 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세율
프랑스	21	0, 14, 30, 41, 45
아일랜드	20	20, 40
일본 ¹⁾	20	5, 10, 20, 23, 33, 40, 45
대한민국	14	6, 15, 24, 35, 38
룩셈부르크	15	0,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39, 40
뉴질랜드	33	10.5, 17.5, 30, 33
스위스	35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1.5
터키	15	15, 20, 27, 35

주: 1) 일본은 비상장주식은 20%의 국세, 상장주식은 15%의 국세와 5%의 지방세를 원천징수함
출처: www.ibfd.org

44)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은 별도 언급하지 않음

- 한편, 프랑스는 2012년 8월 18일 이후 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 단계에서 추가적 세부담 있음
 - 법인이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분배이익의 3%에 해당하는 추가 세부담 발생

나. 분류과세

- OECD 회원국 중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등 총 8개국임
 - 핀란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은 분류과세제도만을 적용하고 있음
 - 덴마크는 분리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미국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대다수의 회원국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을 하나의 범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북유럽국가는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하나의 범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표 IV-2〉 국가별 분류과세 대상 소득

국가	분류과세 대상 소득
덴마크	배당, 주식 자본이득
핀란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임대소득 등
아이슬란드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네덜란드	① Box 2: 지배주주의 배당, 주식 자본이득 ② Box 3: 자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예. 이자, 배당, 주식 자본이득 등)
스페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저작권·영업권소득, 생명보험 등
스웨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자본이득 등
영국	배당소득
미국	적격배당소득

출처: www.ibfd.org

- 핀란드는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주식의 상장 여부, 수익률, 수익금액에 따라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금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상장주식의 경우 85%만을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분류하여 최고 34%의 세율로 과세하며, 15%는 비과세함
 - 비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수익률 및 수익금액에 따라 자본소득 또는 활동소득(Earned income)으로 분류하며 과세대상 금액 또한 달리 적용함
 - 수익률 8% 이내이고 배당금이 15만유로 이내인 경우 상장주식에 부과되는 배당 소득세의 약 30% 수준에서 과세

〈표 IV-3〉 핀란드의 배당소득 과세체계

구분			과세방법
상장주식			배당액의 85%를 자본소득으로 보아 과세
비상장 주식	수익률 8% 이내	15만유로 이내	배당액의 25%를 자본소득으로 보아 과세
		15만유로 초과	배당액의 85%를 자본소득으로 보아 과세
	수익률 8% 초과		배당액의 75%를 활동소득으로 보아 과세

출처: www.ibfd.org

- 네덜란드는 지배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은 Box 2 소득(income from substantial shareholdings)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일반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은 Box 3 소득 (income from saving and investments)로 분류하여 과세함
 - (Box 2) 실제 수령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25%의 단일세율로 과세
 - (Box 3) 법정 연수익률에 의해 산정된 금액 기준으로 30% 단일세율로 과세
 - 2016년 기준 투자금액이 24,437유로(부부 등의 경우 48,874유로) 이하인 경우 과세 면제됨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영국과 미국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 6개국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

- 영국, 미국은 배당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반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배당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 덴마크를 포함한 4개국은 배당에 대하여 단일세율로 과세하나, 핀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은 소득규모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표 IV-4〉 분류과세국가의 배당소득세율

(단위: %)

국가	예납적 원천징수세율	배당소득세율
덴마크	27	42
핀란드 ¹⁾	① 상장주식: 25.5 ② 비상장주식: 28(15만유로까지는 7.5)	30, 34
아이슬란드	20	20
네덜란드	15	① Box 2: 25 ② Box 3: 30
스페인	19	19, 21, 23
스웨덴	30	30
영국	-	7.5, 32.5, 38.1
미국	-	0, 15, 20

주: 1) 핀란드는 자본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배당소득세율 기재
출처: www.ibfd.org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소득 등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대비 낮은 세율에 의하여 배당소득 등에 과세하고 있음
-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은 평균적으로 종합소득 최고세율의 약 80% 수준
 - 네덜란드의 배당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의 약 48% 수준으로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⁴⁵⁾
 - 그러나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일부는 종합소득에 대하여 지방세 등을 추가

부과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배당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의 80% 이하일 것임
 - 덴마크, 스웨덴 등은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과함

다. 분리과세

- OECD 회원국 중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등 총 16개국임
 -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분리과세제도만을 적용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포르투갈, 터키는 분리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덴마크는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를 병행하고 있음

- 이스라엘은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율을 달리 적용함
 - 지배주주의 분리과세율은 30%인 반면, 그 외의 주주는 25%임
 - 지배주주란 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 OECD 회원국의 분리과세율은 일반적으로 누진세율 형태를 가지는 종합소득세율의 최저 1~2번째 구간의 세율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됨
 - 벨기에, 이스라엘, 터키는 종합소득세율의 최저 구간세율과 유사한 수준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의 분리과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의 최저 2번째 구간세율과 유사한 수준

- 분리과세율이 종합소득세율의 최저세율보다 높은 국가 중 일부는 종합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납세자의 과세방법 선택을 허용하고 있음

45) Box 2 소득인 경우 가정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일본, 포르투갈은 분리과세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분리과세율이 종합소득세율의 최저세율보다 높지만 분리과세 적용 납세자의 종합과세 선택권이 없음

〈표 IV-5〉 분리과세제도 채택 국가의 분리과세율

(단위: %)

국가	분리과세율	종합소득세율	종합과세 선택가능 여부
오스트리아	27.5	0, 25, 35, 42, 48, 50	○
벨기에	27	25, 30, 40, 45, 50	○
체코	15	15	×
덴마크 ²⁾	27	9.08, 15	×
독일	25	0, 14, 23.97, 42, 45	○
그리스	10	22, 29, 37, 45	×
헝가리	15	15	×
이스라엘 ¹⁾	30	31, 34, 48	×
이탈리아	26	23, 27, 38, 41, 43	×
일본	15	5, 10, 20, 23, 33, 40, 45	○
대한민국	14	6, 15, 24, 35, 38	×
라트비아	10	23	×
폴란드	19	0, 18, 32	×
포르투갈	28	14.5, 28.5, 37, 45, 48	○
슬로베니아	25	16, 27, 41, 50	×
터키	15	15, 20, 27, 35	×

주: 1) 이스라엘의 경우 최고세율 비교목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적용되는 분리과세율 기재

2) 덴마크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추가되는 지방정부세 및 부담금 비중이 높으며 덴마크의 2016년 기준 결합 종합세율은 최고 56.4%에 달함⁴⁶⁾

출처: www.ibfd.org

라. 비과세

- OECD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는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음
 - 주주단계에서 비과세함에 따라 완벽한 이중과세 해소 가능
- 에스토니아는 주식발행법인이 유보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과세
 - 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 슬로바키아는 2004년 이전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단계에서 과세하였으나, 2004년 조세개혁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단계에서 비과세함

마. 2가지 과세제도의 병행

1)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의 병행

- 미국은 적격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방식에 의하여 과세함
 - 미국은 배당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적격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10~39.6%)에 비하여 낮은 세율(0~20%)에 의하여 과세함

〈표 IV-6〉 적격배당요건

구분	내용
발행회사 요건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보유기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주: 배당락일 60일 이전부터 기산하여 121일 기간 중 61일 이상 보유 •우선주: 배당락일 90일 이전부터 기산하여 181일 기간 중 91일 이상 보유

출처: www.ibfd.org

46) <https://home.kpmg.com/xx/en/home/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tax-rates-online/individual-income-tax-rates-table.html>(검색일자 2017.1.13.)

2) 종합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의 병행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터키는 종합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일본, 포르투갈은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분리과세 시의 세부담보다 종합과세시의 세부담이 적은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과세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터키는 납세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하여 과세함
 - 우리나라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납세자의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함
 - 터키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납세자의 동산소득, 부동산소득 및 급여소득의 합계액이 30,000리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함
 - 동산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이 포함
- 이탈리아는 배당금의 수령인이 지배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방식에 의하여 과세함
 - 배당금의 수령인이 배당금 지급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의 49.72%를 종합과세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6%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지배주주란 배당금 지급법인의 의결권의 20% 이상(상장회사는 2% 이상)을 보유하거나 등록자본(stated capital)의 25% 이상(상장회사는 5% 이상) 보유한 주주
- 일본은 배당금 지급법인의 상장 여부와 배당금 수령인이 소액주주인지 여부 등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방식에 의하여 과세함⁴⁷⁾

-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
- 소액주주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20% 세율로 신고 분리과세 가능
 -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3% 미만 보유 주주
- 소액배당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20%의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가능
 - 소액배당이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으로서 한 번에 수령하는 금액의 환산금액이 10만엔 이하인 경우

〈표 IV-7〉 일본의 배당소득 과세체계

구분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	원천분리과세
적용대상	일반원칙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소액배당
확정신고 필요 여부	○	○	×
차입금이자 공제	○	○	×
적용세율	누진세율	국세 15%, 지방세 5%	
배당세액공제	○	×	×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 손익통산	×	○	×

주: 1. 부흥특별세 제외

출처: 일본 국세청(www.nta.go.jp/taxanswer/shotoku/1331.htm)(검색일자: 2017.1.25.)

3) 분류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의 병행

- 덴마크는 분류과세가 원칙이나 저소득 납세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 주식소득이 50,600크로네(부부의 경우 101,200크로네) 이하인 경우에는 27%의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주식소득이란 배당, 주식의 자본이득을 의미함

47)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331.htm>,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330.htm>(검색일자: 2017.1.25.)

- 주식소득이 50,600크로네(부부의 경우 101,200크로네) 초과하는 경우에는 27%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된 이후 42%의 세율로 분류과세 확정신고

3.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해소 방법

-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후 법인세차감후순이익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분배된 배당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두고 있음
 - 다만, 아일랜드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별도의 방법을 두고 있지 않음

가. 명목이자비용공제

- OECD 회원국 중 벨기에 등은 ‘명목이자비용공제’ 제도를 두어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 이자비용과 같이 ‘자본 증가액’에 대한 가상의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명목이자비용공제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목적보다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도입되었지만, 부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제거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벨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으로 2007년에 명목이자비용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탈리아는 2011년, 터키는 2015년 7월에 해당 제도를 도입함⁴⁸⁾

48)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이탈리아-자기자본공제제도-시행령-발표/204382\(검색일자: 2017.1.18.\)](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이탈리아-자기자본공제제도-시행령-발표/204382(검색일자: 2017.1.18.));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터키---정부-간주이자에-대한-손금산입제도

- 이탈리아의 명목이자비용공제 제도는 2005년 IMF가 제안하였으며, 자기자본을 통한 신규투자 활성화와 지나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터키는 현금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제도 도입
- 참고로, 스위스 국회는 2016년 6월 17일 명목이자비용공제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법인세 개정안을 승인함⁴⁹⁾
 - 스위스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명목이자비용공제 제도 도입 추진
 - 상기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는 경우 2019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나. 부분과세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핀란드, 프랑스를 포함한 총 7개국에서 부분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에서 부분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부분과세를 통한 이중과세조정은 대부분 종합과세제도 채택국에서 도입했으며, 예외적으로 핀란드는 분류과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부분과세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 중 부분과세 방식 채택국가들은 배당금의 40~50% 수준에서 과세제외 금액을 결정하고 있음
 - 핀란드를 제외한 6개국 모두 배당금의 40~50%를 비과세함

를-도입함/523292(검색일자: 2017.1.18.);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11203>(검색일자: 2017.1.18.) 참조

49)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wiss-parliament-approves-corporate-tax-reform-iii>(검색일자: 2017.1.23.)

- 핀란드는 주식의 종류 및 수익률에 따라 15~75% 비과세

□ 스위스는 2009년부터 지배주주에 한정하여 배당소득 부분과세 방식을 채택⁵⁰⁾

- 이종과세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배당과 자본이득 간의 조세차익 거래 방지 목적
 - 스위스는 별도의 이종과세 해소방법 없이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있었으나,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에 따라 배당과 주식 자본이득의 교환을 통한 조세차익 거래 가능하여 사내유보소득이 지나치게 높았음
- 지배주주란 주식 발행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를 의미함
- 일부 지방정부(Canton) 단위에서도 연방정부와 유사한 수준의 배당소득 부분과세 방식을 도입한 경우가 있음

〈표 IV-8〉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부분과세

구분	과세제도	부분과세 방식 내용
핀란드	분류과세	주식의 종류 및 수익률에 따라 25~85%만 과세
프랑스	종합과세	배당의 60%만 과세
이탈리아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 배당의 49.72%만 과세
룩셈부르크	종합과세	배당의 50%만 과세
포르투갈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 배당의 50%만 과세
스위스	종합과세	지배주주의 경우 배당의 60%만 과세 다만, 사업용자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는 50%만 과세
터키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 배당의 50%만 과세

출처: www.ibfd.org

50) Reinar & Schmid(2008), pp. 216~218

다. 임퓨테이션(Imputation)

- 임퓨테이션 방식이란 주주가 수령한 배당금과 그 배당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액을 개인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산출한 이후, 산출세액으로부터 법인단계에서 그 배당분에 대하여 지불한 귀속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의미함⁵¹⁾
- OECD 회원국 중 임퓨테이션 방식은 종합과세를 채택한 국가에서만 존재함
 -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한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총 6개국이 채택하고 있음
- 임퓨테이션 방식을 채택한 국가 중 일부는 주식발행법인이 부담한 실제 법인세액으로부터 무관한 방식에 의하여 귀속법인세액을 산정함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납부 여부 및 실제 부담수준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주주 귀속법인세액을 산정함
 -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방식은 수정된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은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주 귀속법인세액을 산정함
- 임퓨테이션 방식을 채택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체제임
 - 다만, 캐나다는 단일 법인세율이 원칙이지만 내국인 소유 비상장기업(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등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됨⁵²⁾
 -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내국인 소유 비상장기업을 구분하여 2가지 배당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음
 - 내국인 소유 비상장기업의 배당가산율: 17%
 - 그 외 기업의 배당가산율: 38%

51) 김진수(2004), p.39

52) 주정부에서도 연방정부와 유사한 수준에서 임퓨테이션 방식 적용

- 참고로, 영국, 아일랜드 등 과거 임퓨테이션 방식을 이용하던 OECD 국가 중 일부는 임퓨테이션 방식 대신 부분과세 또는 분류·분리과세 등으로 이중과세 완화방법을 대체하였음⁵³⁾
 - 영국(1997년, 1999년), 아일랜드(1999년), 독일(2001년), 이탈리아(2004년), 핀란드(2005년), 프랑스(2005년), 노르웨이(2006년) 등이 임퓨테이션 방식을 폐지하였음
 - EU 회원국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차별금지원칙의 위배를 이유로 임퓨테이션 방식의 폐지를 권고한 것이 가장 큰 폐지 요인임
 - EU 회원국은 임퓨테이션 방식 자체의 효율성 문제보다는 ECJ의 권고에 의하여 임퓨테이션 방식 폐지
 - ECJ는 임퓨테이션 방식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본이동에 제약을 가해 EU 회원국 투자자 간 차별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
 - 그외 세제의 단순화(이탈리아), 기업에 배당보다 재투자 장려(영국) 목적도 반영되어 있음
 - 임퓨테이션 방식 폐지국들은 폐지 시점에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음
 - 다만, 노르웨이는 임퓨테이션 방식 폐지 시점에 법인세율 인하가 없었음
- 이원적 소비세제 국가인 노르웨이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간의 큰 세부담 격차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2006년 임퓨테이션 방식 폐지⁵⁴⁾
 - 노르웨이는 1992년 이원적 소비세제를 도입하여 자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대비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임퓨테이션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제거하였음
 - 이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간 큰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여 근로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전환하려는 조세회피 발생
 -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006년 임퓨테이션 방식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53) Ainsworth(2016), pp.58~63

54) 안종석·전병목(2007), pp.74~75

라. 배당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방식이란 주주의 개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과세소득에 합산된 배당금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임⁵⁵⁾
 - 계산방식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방식과 임퓨테이션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당세
액공제방식에 의할 경우 주주의 과세소득에 합산되는 배당액은 주주 귀속법인세액을
가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임

- OECD 35개 회원국 중 일본이 배당세액공제방식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있음
납세자의 과세소득규모 및 특정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라 1.25~10%
의 배당세액공제율 적용

마. 경감세율 적용(분류, 분리, 비과세)

- 종합과세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국가는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분류·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효과를 제거하고 있음
 - 즉, 분류·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효과가 일정 부분 제거되므로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이중과세 제거방법을 두고 있지 않음

- OECD 35개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 2개국은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효과를 제거하고 있음
 -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완벽한 이중과세 효과의 제거가
가능함

55) 김진수(2004), p.39

4.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세부담 비교⁵⁶⁾

가. 총세부담 비교분석

- OECD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세율은 명목세율(국세)로 하며 각국 고소득층 납세자의 2016년도 세부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정함
 - 납세자에게 복수비례세율 적용 시 최고세율을 적용함
 - 이중과세효과 분석을 고려하여 100% 지배주주에게 적용되는 총세부담 비교
 - 이스라엘,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지배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총세부담률이 달라짐
 - 배당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세부담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각종 지방세 및 부가세의 세율은 고려하지 않음

-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법인, 개인단계 그리고 이를 총괄하였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최고 세부담을 비교분석함
 - 기업이 소득을 벌어 법인세를 납부하고, 세후수익을 전액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각 과세주체별 부담세액, 법인과 개인이 부담한 총세부담률의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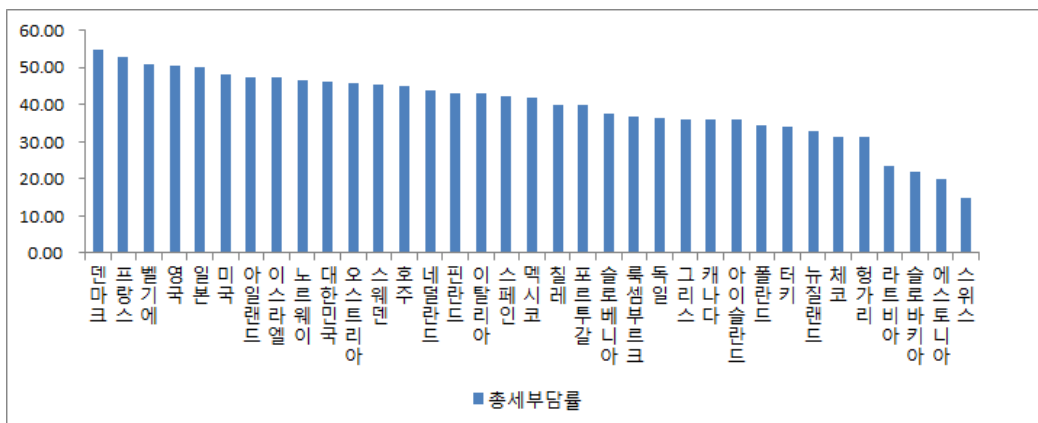
-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OECD 평균 총세부담률은 39.67%이며, 이 중 법인세 비중은 59%, 소득세 비중은 41%임
 - 기업이 100이라는 소득을 얻어 세후수익을 전액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세후수익은 60.33임

56)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명목세율을 이용하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 부담을 비교하였으므로 국가별 단순 세부담 비교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

- OECD 35개 회원국 중 총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54.8%)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14.8%)임
- 총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 프랑스(52.8%), 벨기에(51.1%), 영국(50.5%), 일본(50.2%) 등이 있음
- 총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스위스, 에스토니아(20.0%), 슬로바키아(22.0%), 라트비아(23.5%) 등이 있음
 - 스위스의 이례적으로 높은 지방소득세율(8.5~33.5%)을 고려하면 국세 및 지방세를 감안한 총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임

[그림 IV-1]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총세부담률

(단위: %)



- OECD 35개 회원국을 과세제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균 총세부담률을 비교하여 보면, 분류과세의 총세부담률이 가장 높고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그러나 다른 과세제도와는 달리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국세 이외에 지방세 및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상기 분석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또한, 4가지 유형 모두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비중이 소득세 과세비중에 비하여 높음
 - 이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소득세율이 법인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9〉 OECD 회원국의 과세제도 유형별 평균 총세부담률

(단위: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평균 총세부담률	40.54	45.47	39.00	21.00
법인세 비중	57	52	57	100
소득세 비중	43	48	43	0

출처: 〈표 VI-10〉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46.3%이며, 법인세 비중은 47%, 소득세 비중은 53%임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6.63%p 높음
 - 총세부담률의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12%p 낮음
 - 우리나라가 속한 종합과세 채택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총세부담률의 법인세 비중이 10%p 낮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32.9%이며, 법인세 비중은 67%, 소득세 비중은 33%임
 -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되는 경우 OECD 회원국 중 분리과세 채택국의 평균 총세부담률보다 6.1%p 낮으며, 법인세 비중은 10%p 높음
 - 이는 분리과세 채택국 중 우리나라의 분리과세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표 VI-10〉에서 분리과세로 분류한 9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0개국 중 우리나라의 분리과세 소득세율은 낮은 편임

〈표 IV-10〉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세부담 비교(5758)(2016년 12월 기준)

국가	과세 방식	법인세율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	배당금	과세 비율	배당소득세율 (최고)	Gross-up 배당	배당 가산율	배당 세액공제	소득세	총세 부담률	법인세 /총세 부담	소득세 /총세 부담
호주	종합	30.00%	100	30.00	70.00	100.00%	45.00%	100.00	42.9%	30.00	15.00	45.0%	67%	33%
오스트리아	분리	25.00%	100	25.00	75.00	100.00%	27.50%				20.63	45.6%	55%	45%
벨기에	분리	33.00%	100	33.00	67.00	100.00%	27.00%				18.09	51.1%	65%	35%
캐나다	종합	15.00%	100	15.00	85.00	100.00%	33.00%	117.30	38.0%	17.62	21.09	36.1%	42%	58%
칠레	종합	24.00%	100	24.00	76.00	100.00%	40.00%	100.00	31.6%	24.00	16.00	40.0%	60%	40%
체코	분리	19.00%	100	19.00	81.00	100.00%	15.00%				12.15	31.2%	61%	39%
덴마크	분류	22.00%	100	22.00	78.00	100.00%	42.00%				32.76	54.8%	40%	60%
에스토니아	비과세	20.00%	100	20.00	80.00	0.00%	0.00%				0.00	20.0%	100%	0%
핀란드	분류	20.00%	100	20.00	80.00	85.00%	34.00%				23.12	43.1%	46%	54%
프랑스	종합	35.33%	100	35.33	64.67	60.00%	45.00%				17.46	52.8%	67%	33%
독일	분리	15.00%	100	15.00	85.00	100.00%	25.00%				21.25	36.3%	41%	59%
그리스	분리	29.00%	100	29.00	71.00	100.00%	10.00%				7.10	36.1%	80%	20%
헝가리	분리	19.00%	100	19.00	81.00	100.00%	15.00%				12.15	31.2%	61%	39%
아이슬란드	분류	20.00%	100	20.00	80.00	100.00%	20.00%				16.00	36.0%	56%	44%
아일랜드	종합	12.50%	100	12.50	87.50	100.00%	40.00%				35.00	47.5%	26%	74%
이스라엘	분리	25.00%	100	25.00	75.00	100.00%	30.00%				22.50	47.5%	53%	47%
이탈리아	종합	27.50%	100	27.50	72.50	49.72%	43.00%				15.50	43.0%	64%	36%
일본	종합	23.40%	100	23.40	76.60	100.00%	45.00%			7.66	26.81	50.2%	47%	53%
대한민국	종합	22.00%	100	22.00	78.00	100.00%	38.00%	86.58	11.0%	8.58	24.32	46.3%	47%	53%
라트비아	분리	15.00%	100	15.00	85.00	100.00%	10.00%				8.50	23.5%	64%	36%
룩셈부르크	종합	21.00%	100	21.00	79.00	50.00%	40.00%				15.80	36.8%	57%	43%
멕시코	분리 종합	30.00%	100	30.00	70.00	100.00%	35.00%	100.00	42.9%	30.00	12.00	42.0%	71%	29%
네덜란드	분류	25.00%	100	25.00	75.00	100.00%	25.00%				18.75	43.8%	57%	43%
뉴질랜드	종합	28.00%	100	28.00	72.00	100.00%	33.00%	100.00	38.9%	28.00	5.00	33.0%	85%	15%
노르웨이	종합	25.00%	100	25.00	75.00	115.00%	25.00%				21.56	46.6%	54%	46%
폴란드	분리	19.00%	100	19.00	81.00	100.00%	19.00%				15.39	34.4%	55%	45%
포르투갈	종합	21.00%	100	21.00	79.00	50.00%	48.00%				18.96	40.0%	53%	47%
슬로바키아	비과세	22.00%	100	22.00	78.00	0.00%	0.00%				0.00	22.0%	100%	0%
슬로베니아	분리	17.00%	100	17.00	83.00	100.00%	25.00%				20.75	37.8%	45%	55%

〈표 IV-10〉의 계속

국가	과세 방식	법인세율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	배당금	과세 비율	배당소득세율 (최고)	Gross-up 배당	배당 가산율	배당 세액공제	소득세 부담률	총세 부담률	법인세 /총세부담	소득세 /총세부담
스페인	분류	25.00%	100	25.00	75.00	100.00%	23.00%				17.25	42.3%	59%	41%
스웨덴	분류	22.00%	100	22.00	78.00	100.00%	30.00%				23.40	45.4%	48%	52%
스위스	종합	8.50%	100	8.50	91.50	60.00%	11.50%				6.31	14.8%	57%	43%
터키	종합	20.00%	100	20.00	80.00	50.00%	35.00%				14.00	34.0%	59%	41%
영국	분류	20.00%	100	20.00	80.00	100.00%	38.10%				30.48	50.5%	40%	60%
미국	분류	35.00%	100	35.00	65.00	100.00%	20.00%				13.00	48.0%	73%	27%
OECD 평균											39.67%	59%	41%	

주: 1. 배당금 = 과세대상소득 - 법인세
 2. 총세부담 = 법인세 + 소득세
 3. 총세부담률 = 총세부담 ÷ 과세대상소득
 4. 최고 세부담 및 이중과세 제거효과 비교 목적으로 100% 주주가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의 과세방식 및 세율 적용
 5.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배당시 추가되는 분배세(Distribution tax) 반영분임
 6. 납세자가 지배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스라엘(10% 지분율), 이탈리아(상장 2%, 비상장 20% 지분율), 일본(3% 지분율), 네덜란드(5% 지분율)는 총세부담률이 각각 43.75%, 46.35%, 34.89%, 47.5%(네덜란드는 비지배주주인 경우 실수령액이 아닌 연투자수익률에 의한 간주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해당 효과 미반영)로 변경됨
 7. 미국은 자격배당으로 가정함
 8. 다른 회원국과는 달리 노르웨이는 배당금 실수령액이 아닌 주식가액 대비 연투자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제가 적용되나 상기 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9. 이중과세 제거방법 중 명목이자 비용공제 효과는 미반영되어 있음
 출처: www.ibfd.org 및 Harding(2013) 참고하여 저자 작성

57) 2016년 기준 법인세율(국세)과 법인세 결합세율(국세 및 지방세 등)이 10%p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캐나다(국세 15%, 결합세율 26.8%), 독일(국세 15%, 결합세율 30.18%), 스위스(국세 8.5%, 결합세율 21.25%)이며 상기 표는 법인세율(국세)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출처: stat.oecd.org/publsec/taxation/Market regulations/Taxation/Tax Database/Table II.1. Corporate income tax rate), (검색일자: 2017.1.13.)

58) 2016년 기준 소득세율(국세)과 소득세 결합세율(국세 및 지방세 등)이 10%p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캐나다(국세, 33%, 결합세율 44.5~54%), 스위스(국세, 11.5%, 결합세율 20~45%), 프랑스(국세 45%, 결합세율 64.5% - 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표준 차감효과 미반영), 아일랜드(국세 40%, 결합세율 51% - 사회보장기여금 효과)이며 상기 표는 소득세율(국세)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출처: www.ibfd.org, https://home.kpmg.com/xx/en/home/services/tax/tools-and-resources/tax-rates-online/individual-income-tax-rates-table.html), (검색일자: 2017.1.16.)

- 종합과세방식에 의해 과세하는 국가는 이중과세효과를 완벽하게 해소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호혜적인 세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종합과세 국가는 임퓨테이션 방식 등을 통해 이중과세 효과를 완벽하게 해소하기도 하지만, 소득세 계산 시 배당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 호혜적인 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총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좀 더 호혜적인 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배당소득을 분류과세, 분리과세 및 비과세 방식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가는 사업소득에 비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호혜적인 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분류과세방식 등을 채택한 국가 중 다수 국가의 총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발견됨

- OECD 회원국 중 호주, 칠레,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뉴질랜드는 이중과세효과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있음
 - 호주, 칠레, 뉴질랜드는 종합과세국가로서 법인세율과 연계된 임퓨테이션 방법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국가이며,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이 같아 완벽한 이중과세 해소가 가능함
 - 슬로바키아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국가이지만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아 배당에 대해 좀 더 호혜적인 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탈리아는 부분과세방법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종합과세국가임
 - 이탈리아는 법인세가 단일세율임

-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이중과세효과의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 편에 해당

-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중과세효과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 체코, 헝가리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하나 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율이 같아 이중과세 해소 효과가 없음
 - 아일랜드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며 별도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방법을 두고 있지 않음

- 반면,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방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 해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임퓨테이션 방식을 통해서 이중과세효과를 해소하나, 누진체계를 가지는 법인세율의 최저구간세율(10%)을 바탕으로 임퓨테이션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이중과세 해소효과가 크지 않음
 - 프랑스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면서 부분과세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나 이중과세 해소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⁶⁰⁾
 - 미국은 적격배당에 대하여 분류과세방식으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있으나 이중과세 해소효과가 크지 않음

- 멕시코는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있으나 10%의 추가 분리과세효과로 인하여 배당에 대하여 비호혜적인 세율을 보이고 있음
 - 멕시코는 법인세율에 연계한 임퓨테이션 방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의 추가 분리과세가 있기 전에는 이중과세 효과가 완벽하게 해소되었음

60) 다만, 각주 58)에 기재된 소득세 국세와 결합세율의 차이가 10%p 이상 나는 국가 중 프랑스는 유일하게 부분과세방식에 의하여 이중과세효과를 제거하고 있는바, 결합세율을 기준으로 이중과세제거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총세부담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표 IV-11〉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효과 비교⁶¹⁾

국가	과세 방식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	배당금	소득세	총세 부담률	종합소득 세율	차이
호주	종합	100	30	70	15	45.0%	45.0%	0.0%p
오스트리아	분리	100	25	75	20.63	45.6%	55.0%	-9.4%p
벨기에	분리	100	33	67	18.09	51.1%	50.0%	1.1%p
캐나다	종합	100	15	85	21.09	36.1%	33.0%	3.1%p
칠레	종합	100	24	76	16	40.0%	40.0%	0.0%p
체코	분리	100	19	81	12.15	31.2%	15.0%	16.2%p
덴마크	분류	100	22	78	32.76	54.8%	54.25%	1.6%p
에스토니아	비과세	100	20	80	0	20.0%	20.0%	0.0%p
핀란드	분류	100	20	80	23.12	43.1%	54.25%	-11.1%p
프랑스	종합	100	35.33	64.67	17.46	52.8%	45.0%	7.8%p
독일	분리	100	15	85	21.25	36.3%	45.0%	-8.8%p
그리스	분리	100	29	71	7.1	36.1%	45.0%	-8.9%p
헝가리	분리	100	19	81	12.15	31.2%	15.0%	16.2%p
아이슬란드	분류	100	20	80	16	36.0%	46.25%	-10.3%p
아일랜드	종합	100	12.5	87.5	35	47.5%	40.0%	7.5%p
이스라엘	분리	100	25	75	22.5	47.5%	48.0%	-0.5%p
이탈리아	종합	100	27.5	72.5	15.5	43.0%	43.0%	0.0%p
일본	종합	100	23.4	76.6	26.81	50.2%	45.0%	5.2%p
대한민국	종합	100	22	78	24.32	46.3%	38.0%	8.3%p
라트비아	분리	100	15	85	8.5	23.5%	23.0%	0.5%p
룩셈부르크	종합	100	21	79	15.8	36.8%	40.0%	-3.2%p
멕시코	분리/종합	100	30	70	12	42.0%	35.0%	7.0%p
네덜란드	분류	100	25	75	18.75	43.8%	52.0%	-8.3%p
뉴질랜드	종합	100	28	72	5	33.0%	33.0%	0.0%p
노르웨이	종합	100	25	75	21.56	46.6%	46.9%	-0.3%p
폴란드	분리	100	19	81	15.39	34.4%	32.0%	2.4%p
포르투갈	종합	100	21	79	18.96	40.0%	48.0%	-8.0%p
슬로바키아	비과세	100	22	78	0	22.0%	25.0%	-3.0%p
슬로베니아	분리	100	17	83	20.75	37.8%	50.0%	-12.3%p
스페인	분류	100	25	75	17.25	42.3%	45.0%	-2.8%p
스웨덴	분류	100	22	78	23.4	45.4%	57.1%	-11.7%p
스위스	종합	100	8	91.5	6.31	14.8%	11.5%	3.3%p
터키	종합	100	20	80	14	34.0%	35.0%	-1.0%p
영국	분류	100	20	80	30.48	50.5%	45.0%	5.5%p
미국	분류	100	35	65	13	48.0%	39.6%	8.4%p
OECD 평균						39.67%		

주: 1. 차이 = 총세부담률 - 종합소득세율

2. 이중과세 제거효과 비교목적으로 100% 지배주주가 1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 및 세율 적용

출처: www.ibfd.org 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V. OECD 회원국의 주식 자본이득⁶²⁾

1. 주식양도차익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금액

가. 과세대상 산정 방법

- OECD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양도차익은 주식양도가액에서 주식매입비용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함
 - 여기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
 -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필요경비에는 ‘매수할 때 부담한 거래수수료’, ‘팔 때 부담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됨⁶³⁾

- OECD 회원국은 대체로 주식양도가액을 주식을 처분할 때 받은 금전 기타 이득으로 산정함
 - 영국은 처분 시를 매도계약이 체결된 때를 의미하며 조건부 계약인 경우는 조건이 충족된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주식이 실제로 양도된 때를 말함

61) <표 IV-10>과 같이 국세(명목세율)만을 기준으로 총세부담률과 종합소득세율을 비교분석함. 다만, 이중과세효과 비교목적으로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종합소득세율은 결합세율에 의하여 분석 (<https://home.kpmg.com/xx/en/home/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tax-rates-online/individual-income-tax-rates-table.html>, 검색일자 2017.2.8.)

62) 본 장의 OECD 회원국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 IBFD(<https://online.ibfd.org/>)를 인용 및 참조하여 작성함.

63) 홍범교·김진수, 전거서, p. 59.

- 한편 OECD 회원국은 주식양도가액을 대체로 주식매도인이 지급받은 대가로 산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슬로바키아, 영국 등의 국가는 지급받은 대가의 산정이 불가능하면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따라 산정함
 - 그리스는 처분된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함
 - 상장주식인 경우는 주식양도에 관계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관련 문서상에 나타난 대로 함
 - 비상장주식인 경우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순지분가치(value of net equity)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된 양도문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
 - 포르투갈도 처분된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함
 - 상장주식이라면 주식양도일의 공식적인 상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식양도일이 불분명하면 주식이 양도된 해에 가장 높은 공식적인 상장가격임
 - 비상장주식이라면 회사로부터 최근 승인된 대차대조표의 장부상 가격임

- 반면 주식매입비용 산정에는 대체로 매입원가(original cost)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incidental cost)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멕시코를 예로 들면 매입비용 산정 시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며 매입원가 외에 매입에 필요한 비용, 주식취득에 필요한 세금을 포함함
 - 그리스는 매수한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함
 - 상장주식인 경우는 앞서 본 주식양도가액 산정과 동일함
 - 비상장주식인 경우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순지분가치(value of net equity)에 따라 결정되며, 매입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영(0)으로 간주함
 - 포르투갈도 매수한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매입가액을 달리 산정함
 - 상장주식인 경우는 입증 가능한 비용이며 만약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전 2년 중 가장 낮은 상장 또는 선언된 가액임
 - 비상장주식인 경우도 입증이 가능한 비용이며 만약 입증할 수 없다면 명목상 가치

(nominal value)로 함

나. 자본이득세 적용대상 금액

- 앞서 본 바와 같이 OECD 회원국은 대체로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을 주식양도가액과 주식매입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함
- 다만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는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실질자본이득에 과세하며 이 중 아일랜드는 2002년까지의 인플레이션만 고려함
 - 칠레는 포괄적 통화조정제도를 채택하여 조세조정지표(i.e. monthly tax unit)의 값을 매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자본이득에 과세함
 - 이스라엘은 양도차익을 실질적인 부분과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부분에만 과세함
 -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은 이스라엘 소비자물가지수(the Israeli Consumer Price Index, CPI)를 자본자산의 취득가격에 적용하여 산정함
 - 터키는 자본자산의 취득가격을 국가통계기관으로부터 결정된 생산물가지수(the Production Price Index)에 따라 증가시켜 산정함
- 아일랜드는 인플레이션 조정(indexation relief)제도를 2002년 폐지하여 2002년까지 누적된 자본이득에만 인플레이션 조정을 함⁶⁴⁾
 - 인플레이션 조정제도의 폐지 당시 아일랜드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면세를 제한하고,
 -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면서 동 조정을 한시적으로만 적용하게 됨
- OECD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차익의 전부에 과세하나 캐나다와 포르투갈은 조

64) An Roinn Airgeadais Department of Finance(2016.07.19.), p. 3.

건 없이 주식양도차익의 일정률에 과세하여 과세대상금액을 조정함⁶⁵⁾

- 캐나다는 주식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자산처분이 2000년 후에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자본이득의 50%만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과세함
 - 캐나다의 the Technical Committee on Business Taxation은 인플레이션 조정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부분과세제도를 채택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함⁶⁶⁾
- 포르투갈은 주식양도차익에 종합과세 시 순자본이득의 50%만을 일반적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반면에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거나 과세제도 자체를 달리하는 국가가 있음

- 호주, 프랑스, 슬로베니아, 터키는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동일한 과세제도하에서 과세금액을 조정함(자세한 내용은 본장의 2. 나. 참조)
- 벨기에, 칠레, 체코,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미국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제도 자체가 달라짐(자세한 내용은 본장의 2. 가. 5) 참조)

□ 한편 이탈리아는 12개월 중 의결권이나 회사자본을 일정비율 이상 양도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본이득의 49.72%만을 과세함

- 상장주식은 의결권의 2% 초과 또는 회사자본의 5%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 비상장주식은 의결권의 20% 초과 또는 회사자본의 25%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 노르웨이는 자본이득에 “shielding deduction”에 따른 공제 후 일정률로 가산(gross-up)하여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함(자세한 내용은 IV. 1. 가. 참고)⁶⁷⁾

65) Harding, 전계서, p.35 참고.

66) “Report of the Technical Committee on Business Taxation”, Department of Finance, Ottawa, 1997, p. 7.17.

67) KPMG ETF Investor Tax Guide (2016), KPMG LLP, <https://www.blackrock.com/es/literature/brochure/etf-investor-tax-guide-en-emea-pc-brochure.pdf>, pp. 89~90.(검색일자: 2017. 3. 8.)

- 공제되는 금액은 cost price of share에 shielding interest rate을 곱한 값이며,⁶⁸⁾
- shielding deduction은 이월가능하나 이에 따라 공제된 소득이 자본손실을 야기할 수 없음
- 가산율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1.15와 유사한 수준임⁶⁹⁾

다. 주식처분 손실의 상계 여부

- OECD 회원국 중 주식처분손실을 주식처분이익 또는 여타의 자본이익 기타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상계되도록 하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등 총 31개국임
- 그 외의 국가는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하여 손실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벨기에, 뉴질랜드, 스위스는 일반적으로 자본이익에 비과세하므로 자본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상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음
 - 네덜란드도 원칙적으로 자본이익에 비과세하나 자본처분손실의 상계를 일정한 경우에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함
- 주식처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OECD 회원국은 대체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자본이익으로 봄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대한민국,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등이 자본이익을 대상으로 함
 - 스웨덴은 상장주식의 자본손실이 상장주식의 자본이익만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지만, 비상장 자본손실은 상장·비상장 자본이익을 모두 상계할 수 있도록 함

68) KPMG, 상계서,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0.8%임

69) IBFD, “[t]he similar factor of 1.15 also applies for calculation of the capital gain derived by individual shareholders from selling shares,” (section 10-31(1) of the Sktl).

- OECD 회원국 중에는 위 기준보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유가증권 기타 주식양도차익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음
 - 체코⁷⁰⁾,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터키(2006년부터) 등은 유가증권 기타 주식양도차익으로 한정함
 - 네덜란드는 Box 2 카테고리에 속한, 예외적으로 과세 가능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함⁷¹⁾

- 반면에 OECD 회원국 중 핀란드,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페인, 미국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자본이득의 범위보다 넓게 봄
 - 핀란드는 금융소득을 상계의 대상으로 함
 - 일본은 주식처분손실의 배당소득과의 손익통산을 인정함
 - 이탈리아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기타 소득'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함
 - 이스라엘은 자본이득, 이자, 배당을 상계의 대상으로 함
 - 스페인은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저축소득'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함
 - 미국은 초과자본손실에 대하여 매년 3,000달러의 경상소득을 상계대상으로 함

- 한편 네덜란드는 이례적으로 자본손실의 성격을 공제액(credit)으로 전환하여 근로소득이 속한 Box 1 카테고리의 과세대상 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이와 같은 성격의 전환은 Box 2 카테고리에 속한 예외적으로 과세가능한 주식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한정함

- 자본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OECD 회원국은 대체로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는 소급공제까지도 허용함
 -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는 2~10년 사이로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와 무기한으로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음

70) E&Y(2016), p. 339

71) Box 2 카테고리는 "income from substantial shareholdings"를 포함한다.

- 한편 멕시코는 이전 연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손실의 경우는 이월공제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상계를 제한하고 있음
- 한편 앞서 본 과세대상금액의 조정과 주식처분손실의 상계가 동시에 적용되면 호주는 주식처분손실의 상계를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금액 조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2. 자본이득 과세제도

가. 자본이득세의 과세방식

1) 종합과세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하여 15개국임
 -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종합과세제도만 적용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는 EEA/OECD에 소재한 회사의 상장주식 처분 시 동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투자계좌에 입금된 양도가액의 인출시점까지 과세이연함
 - 반면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은 분리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이탈리아, 미국은 분류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체코,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는 종합과세제도와 비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터키는 분리과세제도, 분류과세제도, 종합과세제도를 모두 적용하고 있음
 - 2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국가의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함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체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는 단일비례세율로 과세하며 그 외의 국가는 복수비례세율로 과세함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 멕시코는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자본이득의 20%를 예납적 원천징수함
 - 멕시코의 종합소득은 1.92~35%구간에 11단계의 세율로 과세되며 예납적 원천징수는 이 중 6번째 세율인 21.36%와 유사한 수준임

2) 분류과세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등 총 20개국임
 -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72)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은 분류과세제도만을 적용하고 있음
 - 칠레, 미국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벨기에, 네덜란드는 비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터키는 분리과세제도, 분류과세제도, 종합과세제도를 모두 적용하고 있음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은 복수비례세율로 과세하며 그 외의 국가들은 대체로 단일비례세율로 과세함
 - 덴마크는 자본이득을 배당과 함께 주식소득(income from share)으로 분류하여 50,600크로네까지는 27%의 세율로, 초과분은 42%의 세율로 분류과세함

72) 일본은 '신고분리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분류과세제도로 판단된다. 첫째, 일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둘째, 2003년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의무가 없는)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핀란드는 자본이득을 자본소득(income from capital)으로 분류하여 30,000유로까지는 30%의 세율로, 초과분은 34%의 세율로 분류과세함
 - 스페인은 자본이득을 이자, 배당과 함께 저축소득(savings income)에 포함시켜 누진세율로 분류과세
 - 첫 6,000유로까지는 19%, 6,000유로 초과 50,000유로까지는 21%, 50,000유로 초과분은 23%의 세율로 분류과세함
 - 영국은 과세가능한 자산의 처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로 구분하여 복수비례세율로 분류과세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율 중 기본세율(20%)보다 높은 세율(40%, 45%)의 적용을 받으면 자본이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분류과세⁷³⁾
 - 자본이득금액이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는 금액구간을 초과하면 20%, 초과하지 않으면 10%의 세율로 분류과세함
 - 미국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순장기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결정하여 분류과세
 - 납세자에게 최고종합소득세율(39.6%) 적용 시 최고 20%, 그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25%~35%) 적용 시 최고 15%의 세율로 과세⁷⁴⁾
 - 납세자에게 그보다 더 낮은 종합소득세율(10%, 15%) 적용 시 영세율 적용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8개국은 종합소득세율(최저)보다 낮거나 같게, 9개국은 종합소득세율의 범주 내에서, 3개국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높게 분류과세함
- <표 V-1>에 정리된 바와 같이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네덜란드, 터키, 영국, 미국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최저)보다 낮거나 같은 세율로 분류과세
 -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벨기에, 칠레,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슬로베

73) 참고로 2016~17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 중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이 0에서 32,000파운드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74) 자본자산을 2013년 이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니아, 스페인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의 범주 내에서 분류과세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종합소득세율(최고)보다 분류과세율(최고)이 높게 나타남
 - 스웨덴은 근로소득에 높은 지방세(2016년 기준 평균 지방소득세율 32.1%)가 부과되지만 자본이득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지방세를 고려하면 자본이득을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표 V-1〉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자본이득 분류과세율

(단위: %)

국가	분류과세율	종합소득세율
벨기에	33	25, 30, 40, 45, 50
칠레	20	0, 4, 8, 13.5, 23, 30.4, 35.5, 40
덴마크	27, 42	9.08, 15
핀란드	30, 34	6.5, 17.5, 21.5, 31.75
그리스	15	22, 29, 37, 45
아이슬란드	20	22.68, 23.90, 31.8
아일랜드	33	20, 40
이스라엘	25	31, 34, 48
이탈리아	26	23, 27, 38, 41, 43
일본	15	5, 10, 20, 23, 33, 40, 45
대한민국 ¹⁾	10, 20, 30	6, 15, 24, 35, 38
라트비아	15	23
네덜란드	25	36.55, 40.40, 40.40, 52
폴란드	19	0, 18, 32
슬로베니아	25	16, 27, 41, 50
스페인	19, 21, 23	19, 24, 30, 37, 45
스웨덴	30	0, 20, 25
터키	10	15, 20, 27, 35
영국	10, 20	20, 40, 45
미국	0, 15, 20	10, 15, 25, 28, 33, 35, 39.6

주: 1) 우리나라는 복수비례세율이 아닌 납세주체가 대주주·소액주주인지, 대기업·중소기업 주식인지, 상장·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서 분류과세율이 달라짐(〈표 V-4〉 참고)
출처: IBFD(www.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스페인을 제외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않음
 - 스페인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누진세율 중 최저세율과 동일한 19%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3) 분리과세

- OECD 회원국 중 자본이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총 6개국임
 -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분리과세제도만 적용하고 있음
 -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은 분리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터키는 분리과세제도, 분류과세제도, 종합과세제도를 모두 적용하고 있음

- OECD 회원국의 분리과세율은 <표 V-2>와 같이 일반적으로 단일세율의 형태를 가지며 종합과세세율 최저 2~3번째 세율 구간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됨
 - 헝가리는 종합소득세율이 단일세율인 경우로 동 세율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함
 - 터키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영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취득비용의 산정 시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지 않음

-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하도록 한 국가는 총 2개국으로 독일과 포르투갈이 있음
 - 독일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한계세율이 2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포르투갈은 종합과세로 선택하는 경우 순자본이득의 50%만을 종합과세에 합산하여 과세함

〈표 V-2〉 분리과세제도 채택 국가의 자본이득 분리과세율

(단위: %)

국가	분리과세율	종합소득세율	종합과세 선택가능 여부
오스트리아	27.5	0, 25, 35, 42, 48, 50, 55	×
독일 ¹⁾	25	0, 14, 23.97, 42, 45	○
헝가리	15	15	×
멕시코	10	1.92, 6.40, … 35	×
포르투갈	28	14.5, 28.5, 37, 45, 48	○
터키 ²⁾	영세율	15, 20, 27, 35	×

주: 1) 독일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한계세율이 25%까지인 경우 종합과세로 선택이 가능함

2) 터키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상장주식에 대하여 영세율로 분리과세함

출처: IBFD(www.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4) 비과세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총 7개국으로 이 중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예외없이 비과세함
- 벨기에에는 비과세 원칙이지만 주식매입 후 6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와 같은 투기적 성격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류과세함
- 체코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나 예외적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함
 - 다만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전 24개월 중 의결권주를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함
- 룩셈부르크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납세자가 지배주주가 아니고 6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함
 - 다만 6개월 이내라도 양도차익이 500유로 이내라면 과세하지 않음
- 대한민국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의 경우 비과세하나 그 외의 경

우 분류과세함

-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5%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분류과세함(Box 2 카테고리)
- 슬로바키아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상장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음

5) 2가지 이상 과세제도의 병행

- 칠레, 이탈리아, 미국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칠레는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상장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가 처분하는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며 그 외의 경우는 분류과세함
 - 이탈리아는 원칙적으로 분류과세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12개월 중 일정률의 회사 지분(의결권 또는 자본)을 대량 처분하는 경우 종합과세함(V. 1. 나. 참고)
 - 미국은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류과세하며 그 외의 경우는 종합과세함

-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독일은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아래의 경우 종합과세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처분 직전 5년 중 한 번이라도 회사자본의 1% 이상을 보유했던 경우는 주식양도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
 -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한계세율이 2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종합과세로 선택가능(〈표 V-2〉 참고)
 - 멕시코는 상장주식인 경우는 분리과세하며 비상장주식인 경우는 종합과세함
 - 포르투갈은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체코,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는 비과세제도와 종합과세제도를 병행함
 - 체코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일정한 요건하에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함
 - 룩셈부르크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납세자가 지배주주가 아니고 6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 비과세함
 - 슬로바키아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상장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함

-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는 비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병행함
 - 벨기에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주식매입 후 6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와 같은 투기적 성격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류과세함
 - 그리스는 분류과세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회사 주식자본의 0.5% 미만을 소유하며 2009년 이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함
 - 네덜란드도 비과세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5%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분류과세함(Box 2 카테고리)

- 터키는 종합과세제도, 분류과세제도, 분리과세제도를 모두 적용함
 - 2006년 1월 1일 전 취득한 주식인 경우 주식양도차익 중 24,000리라의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함
 - 취득비용 산정 시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지 않음
 -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상장주식인 경우 영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분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인 경우는 종합과세함
 - 상장주식인 경우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인 경우 인플레이션 조정을 함

나.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금액 조정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국가는 호주, 프랑스, 슬로베니아, 터키 등 총 4개국임
- 반면 오스트리아는 2012년, 독일은 2009년에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폐지함⁷⁵⁾
 - 독일의 2009년 자본이득세제 개편은 2008/9년 법인세제 개편에 연관되어 이루어졌으며,⁷⁶⁾
 - 2008/9년 세제개편은 국·내외 투자 유인을 목적으로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26.38%에서 15.83%로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확대하였음⁷⁷⁾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벨기에, 칠레, 체코,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미국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국가임
- 호주와 터키는 주식의 보유기간을 1년 기준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대상 금액을 감면하거나 비과세함
 - 호주는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50%를 감면함
 - 위 50%감면에 대한 대안으로 1999년 9월 30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취득비용에 인플레이션 조정(indexation)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이러한 선택권 부여는 자본이득의 50%만 과세하는 것이 결국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이며 자본이득 중 물가상승분을 50%로 보는 것으로 판단됨

75) 독일은 2008년까지 취득한 주식의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본이득의 50%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율(0%~47.48%)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반면 독일의 2009년 자본이득세제 개편에 따르면 납세자는 주식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누진소득세율과 단일실효세율(26.38%) 중 적은 세부담을 할 수 있다.(Eichfelder & Lau, "Capital Gains Taxes and Asset Prices: The Impact of Tax Awareness and Procrastination," arqus Discussion Paper No. 170, 2014, p. 6).

76) Eichfelder & Lau, 상계서, p. 5.

77) Eichfelder & Lau, 상계서, p. 5.

- 터키는 2006년 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3개월, 비상장주식은 1년, 그 이후 취득한 상장주식은 1년, 비상장주식은 2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과세하지 않음
- 프랑스와 슬로베니아는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금액 또는 세율의 조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하는 국가임
 - 프랑스는 2년을 초과하여 8년까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50%를, 8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5%를 감면
 - 슬로베니아는 5년 후에서 10년까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15%를 감면하며 이후 매 5년 경과시 5%의 세율을 추가로 감면함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표준세율이 25%이므로 20년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옴
 -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국가는 주식의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대상금액을 감면하거나 비과세함

다.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과세대상 금액 또는 세율의 조정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의 직·간접 보유비율에 따라 지배주주에 해당 시 과세대상 금액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국가는 프랑스 등 총 4개국임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프랑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는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함
 - 반면 오스트리아는 2012년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체코, 칠레,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는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과세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국가임

-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납세자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율을 일정한 경우 인상하여 과세함
 - <표 V-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표준세율 20%보다 10%p 높은 30%의 세율로 과세함
 - <표 V-3>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주식처분 직전 12개월 중 10%를 초과하는 지배권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5%p 인상된 세율로 과세함

- 룩셈부르크는 지배주주인 납세자가 주식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인하하여 과세함
 - 룩셈부르크는 주식처분 직전 5년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식의 보유기간이 6개월 초과 시 50% 인하된 세율로 과세
 - 반면 일반주주는 주식의 보유기간이 6개월 초과 시 비과세

- 프랑스는 지배주주인 납세자의 주식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금액을 일정한 조건하에 감면하여 과세함

- 프랑스는 <표 V-3>에 정리된 바와 같이 지배주주(친인척 지분 포함) 또는 중소기업의 지배권을 가진 주주가 은퇴 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자본이득금액을 감면하여 과세

<표 V-3>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금액 조정

(단위: %)

국가	표준세율	대주주·지배주주의 범위		과세금액 또는 세율의 조정	
프랑스	최고 45%	처분 직전 5년 중 지분을 25%를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방계혈족 등의 지분 포함), 또는 중소기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은퇴하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초과~4년 보유 시 50% 감면, 4년 초과~8년 보유 시 65% 감면, 8년 초과 보유 시 85% 감면	
이스라엘	25%	처분 시 또는 처분 직전 12개월 중 10%를 초과하는 지배권(the means of control)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30%	
대한민국	20%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10%, 20%, 30% <표 V-4> 참고
		유가증권 시장	지분을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초과		
		코스닥시장	지분을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초과		
		코넥스시장	지분을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초과		
룩셈부르크	최고 40%	처분 직전 5년 중 지분을 10%를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배우자, 미성년자녀 등의 지분 포함)		6개월 이내	표준세율
				6개월 초과	평균세율×0.5

주: 1. 2017년 1월 기준.

출처: IBFD(www.ibfd.org),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V-4〉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자본이득세율의 범위

구분	상장, 코스닥 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보유)		소액주주(거래)		대주주(보유)		소액주주
	1년 미만	1년 이상	장외	장내	1년 미만	1년 이상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¹⁾	10%				10%		

주: 1)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1.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를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양도하는 자가 유가증권시장은 1,000분의 1.5, 코스닥상장시장은 1,000분의 3, 장외거래는 1,000분의 5의 세율로 과세함
 출처: <http://www.nts.go.kr/tax/>(검색일자: 2017. 1. 1.)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schedular/taxinfo_main.jsp?numUpdate=493(검색일자: 2017. 3. 3.)

-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국가는 납세자가 지배주주인 경우 자본이득세율을 대체로 인상하여 과세함
-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가 가장 복잡한 양상을 나타냄
 - 〈표 V-3〉과 〈표 V-4〉에 정리된 바와 같이 대주주의 범위를 상장·비상장에 따라서 구분하며 상장주식인 경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따라 달리 보고 있음
 - 또한 상장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 장단, 장외·장내거래, 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자본이득세율을 달리 규정함
- 위와 같은 세제의 복잡성은 조세 중립성 및 조세제도 간소화를 저해하며 조세행정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⁷⁸⁾

78) 이경근, 전문가 간담회, 2016.12.26.

라. 상장 여부에 따른 과세금액 조정

- OECD 회원국 중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국가는 칠레, 체코 등 총 7개국임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칠레, 체코, 덴마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은 주식의 상장·비상장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함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칠레, 체코, 덴마크, 멕시코는 주식의 상장·비상장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국가임
 - 우리나라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만 소액주주가 장내 주식거래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함 (<표 V-4> 참조)
 - 칠레는 상장주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저율로 분류과세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예외 없이 종합과세함
 - 체코는 상장주식은 3년 초과 보유주식 처분 시 지배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하나, 비상장주식은 5년 초과 보유주식 처분 시에만 비과세하고, 그 외는 종합과세함
 - 덴마크는 분류과세가 원칙이지만, 상장주식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경우 비과세함
 - 멕시코는 상장주식의 경우 분리과세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종합과세함

- 포르투갈은 비상장 소기업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순주식양도차익의 50%만 과세함

- 스웨덴은 주식의 상장·비상장에 따라 취득가액·취득비용 산정을 달리함
 -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서 공제가능한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종의 모든 주식의 평균취득비용으로 산정함
 - 상장주식은 선택적 표준방식(optional standard rule)을 적용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20%로 보고 있음

3. OECD 회원국의 자본이득 세부담 비교⁷⁹⁾

- 본 장에서 자본이득세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개인단계에서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이지만 법인세 차감 후 기업의 순이익을 주식양도차익으로 가정함
 - OECD 회원국의 각 기업이 동일한 경제상황하에 법인소득 100을 벌어들여 각 회원국의 법인소득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가정함
 - 세후수익 전액을 주주가 주식처분 시 벌어들인 주식양도차익(주식양도가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인 매입비용을 차감)으로 가정함⁸⁰⁾

- OECD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율은 명목세율(국세)로 하고 각국 고소득층 납세자의 2016년도 세부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정함
 - 납세자에게 종합·분류과세로 복수비례세율 적용 시 최고세율을 적용함
 - 납세자는 첫 번째 사례에서는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을, 두 번째 사례에서는 1년 1일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함
 - 납세자는 처분 직전 5년 중 지분율 1.01%를 보유한 지배주주임을 가정함
 - 상장·비상장에 따라 과세제도가 달라지는 경우 상장주식을 전제로 함
 - 각국의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각종 특별공제제도는 고려하지 않음
 - 각종 지방세 및 부가세의 세율은 고려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음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양도 건수는 규모가 작으며 앞서 <표 V-4>에서 볼 수 있듯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비과세함
 - 2011년 상장·비상장주식양도에 대하여 “20,864건의 주식양도세가 신고됐으며,”

79)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명목세율을 이용하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 부담을 비교하였으므로 국가별 단순 세부담 비교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

80) 홍범교·김진수, 전계서,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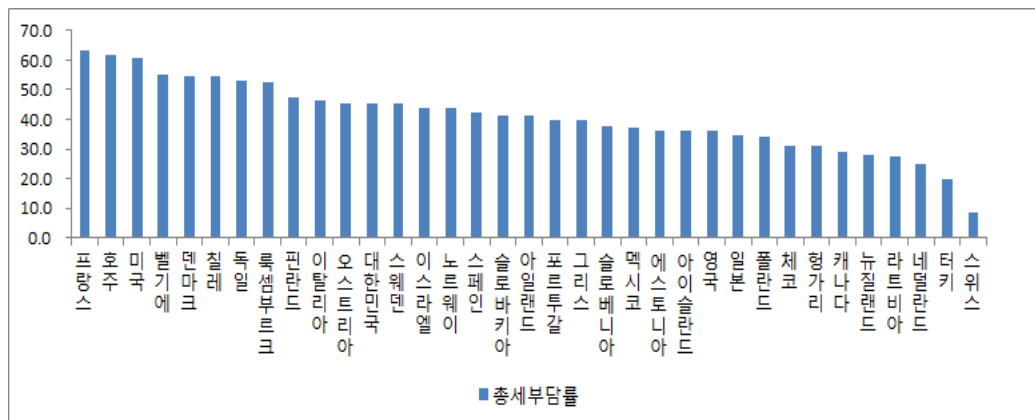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건수는 1,488건”으로 집계됨⁸¹⁾

가. 단기(6개월 미만) 보유 주식처분

- 단기자본이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OECD 평균 총세부담률은 40.87%이며, 이 중 법인세 비중은 58.57%, 개인소득세 비중은 41.43%임
- 기업이 100이라는 법인소득을 벌어 법인소득세 차감 후 남은 이익을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으로 볼 때 주주에게 귀속되는 평균 세후소득은 59.13이며,
- 평균 법인소득세 부담액은 23.94, 평균 개인소득세 부담액은 16.93임

[그림 V-1] OECD 회원국의 단기 주식 자본이득 총세부담률

(단위: %)



출처: IBFD(www.ibfd.org)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OECD 35개 회원국 중 총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63.33%)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8.5%)임([그림 V-1] 참고)

81) 채은동(2013), p. viii.

- 총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프랑스, 호주(61.5%), 미국(60.74%), 벨기에(55.11%), 덴마크(54.76%) 등이 있음
- 총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스위스, 터키(20%), 네덜란드(25%), 라트비아(27.75%), 뉴질랜드(28%)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45.4%이며, 법인세 비중은 48.46%, 개인소득세 비중은 51.54%임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4.53%p 높음
- 반면 총세부담률의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10.11%p 낮음
- OECD 회원국을 과세제도별로 구분하여 평균 총세부담률을 비교하면 종합과세의 총세부담률이 가장 높고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순으로 낮아짐
- 나아가 전 유형의 과세제도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비중이 개인소득세 비중에 비하여 높음

〈표 V-5〉 OECD 회원국의 과세제도 유형별 평균 총세부담률 (단기 보유)

(단위: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평균 총세부담률	46.03	41.75	34.21	21.00
법인세 비중	51.01	53.18	78.62	100
개인소득세 비중	48.99	46.82	21.38	0

출처: 〈표 V-6〉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V-6〉 2016년 OECD 국가의 단기 보유한 주식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 현황(2016년 12월 기준)

국가	과세방식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율	법인세	법인세후소득	과세대상 소득비율	명목자본이득	자본이득세율	자본이득세(b)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액(c)	개인세후소득	총세부담(100-개인세후소득)	총세부담 중 개인 비중 (b 또는 c/총세부담)
호주	종합	100	30%	30	70	1	70	45%	31.5			38.5	61.5%	51.22%
오스트리아	분리	100	25%	25	75	1	75			27.5%	20.625	54.375	45.625%	45.21%
벨기에	분류	100	33%	33	67	1	67	33%	22.11			44.89	55.11%	40.12%
캐나다	종합	100	15%	15	85	0.5	42.5	33%	14.03			70.98	29.03%	48.32%
칠레	종합	100	24%	24	76	1	76	40%	30.4			45.6	54.4%	55.88%
체코	종합	100	19%	19	81	1	81	15%	12.15			68.85	31.15%	39%
덴마크	분류	100	22%	22	78	1	78	42%	32.76			45.24	54.76%	59.82%
에스토니아	종합	100	20%	20	80	1	80	20%	16			64	36%	44.44%
핀란드	분류	100	20%	20	80	1	80	34%	27.2			52.8	47.2%	57.63%
프랑스	종합	100	33.33%	33.33	66.67	1	66.67	45%	30.00			36.67	63.33%	47.37%
독일	종합	100	15%	15	85	1	85	45%	38.25			46.75	53.25%	71.83%
그리스	분류	100	29%	29	71	1	71	15%	10.65			60.35	39.65%	26.86%
헝가리	종합	100	19%	19	81	1	81	15%	12.15			68.85	31.15%	39%
아이슬란드	분류	100	20%	20	80	1	80	20%	16			64.00	36%	44.44%
아일랜드	분류	100	12.5%	12.5	87.5	1	87.5	33%	28.88			58.63	41.38%	69.79%
이스라엘	분류	100	25%	25	75	1	75	25%	18.75			56.25	43.75%	42.86%
이탈리아	분류	100	27.5%	27.5	72.5	1	72.5	26%	18.85			53.65	46.35%	40.67%
일본	신고분리(분류)	100	23.4%	23.4	76.6	1	76.6	15%	11.49			65.11	34.89%	32.93%
대한민국	분류	100	22%	22	78	1	78	30%	23.4			54.6	45.4%	51.54%
라트비아	분류	100	15%	15	85	1	85	15%	12.75			72.25	27.75%	45.95%
룩셈부르크	종합	100	21%	21	79	1	79	40%	31.6			47.4	52.6%	60.08%

〈표 V-6〉의 계속

국가	과세방식	과세 대상 소득	범인 세율	범인세	범인 세후소득	과세대상 소득비용	명목자본 이득	자본이득 세율	자본 이득세 (b)	원천 징수 세율	원천 징수액 (c)	개인세후 소득	총세부담 (100-개인세 후소득)	총세부담액 중 개인 비중 (b 또는 c/총 세부담)
멕시코	분리	100	30%	30	70	1	70			10%	7	63	37%	18.92%
네덜란드	비과세	100	25%	25	75	1	75					75	25%	0%
뉴질랜드	비과세	100	28%	28	72	1	72					72	28%	0%
노르웨이	종합	100	25%	25	75	1	75	25%	18.75			56.25	43.75%	42.86%
폴란드	분류	100	19%	19	81	1	81	19%	15.39			65.61	34.39%	44.75%
포르투갈	종합	100	21%	21	79	0.5	39.5	48%	18.96			60.04	39.96%	47.45%
슬로바키아	종합	100	22%	22	78	1	78	25%	19.5			58.5	41.5%	46.99%
슬로베니아	분류	100	17%	17	83	1	83	25%	20.75			62.25	37.75%	54.97%
스페인	분류	100	25%	25	75	1	75	23%	17.25			57.75	42.25%	40.83%
스웨덴	분류	100	22%	22	78	1	78	30%	23.4			54.6	45.4%	51.54%
스위스	비과세	100	8.5%	8.5	91.5	1	91.5					91.5	8.5%	0%
터키	분리 (영세율)	100	20%	20	80	1	80					80	20%	0%
영국	분류	100	20%	20	80	1	80	20%	16			64	36%	44.44%
미국	종합	100	35%	35	65	1	65	39.6%	25.74			39.26	60.74%	42.38%
OECD 평균														
													40.87%	41.43%

주: 1. 포르투갈은 앞서 본 비와 같이 분리과세 원칙이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 선택 시 최고세율 48%가 적용되지만 과세대상 소득비용이 0.5로 순이득의 50%만 과세되어 종합과세 시 세부담이 분리과세 시보다 낮으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2. 노르웨이의 경우 본 세부담 산정 시 cost price of share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shielding deduction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25%(2016년 이전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적용하는 자본이득의 경우는 IBFD상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본 세부담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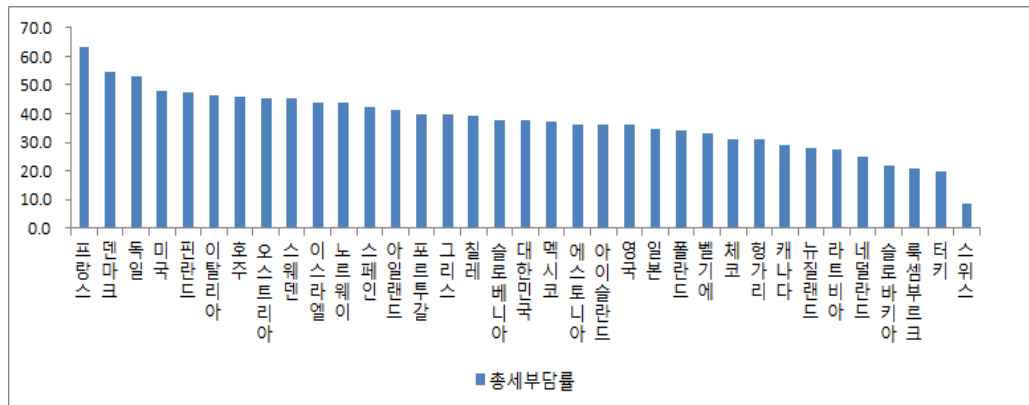
자료: IBFD(www.ibfd.org); Harding, 전게서; 흥병교 · 이상엽, 전게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장기(1년 1일) 보유 주식처분

-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OECD 평균 총세부담률은 37.31%이며, 이 중 법인세 비중은 64.86%, 개인소득세 비중은 35.14%임
- OECD 회원국의 1년 1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 평균 총세부담률은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보다 3.56%p 낮음
 - 이러한 결과는 6개월 미만 보유주식에 대하여 벨기에처럼 투기성에 (중)과세 (speculative tax)하는 경우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기업이 100이라는 법인소득을 벌여 법인소득세 차감 후 남은 이익을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으로 볼 때 주주에게 귀속되는 평균 세후소득은 62.69임
- 평균 법인소득세 부담액은 24.19, 평균 개인소득세 부담액은 13.11임

[그림 V-2] OECD 회원국의 장기 주식 자본이득 총세부담률

(단위: %)



출처: IBFD(www.ibfd.org)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OECD 35개 회원국 중 총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63.33%)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8.5%)임([그림 V-2] 참고)

- 총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프랑스, 덴마크(54.76%), 독일(53.25%), 미국(48%), 핀란드(47.20%) 등이 있음
 - 총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스위스, 터키(20%), 룩셈부르크(21%), 슬로바키아(22%), 네덜란드(25%)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37.6%이며, 법인세 비중은 58.51%, 개인소득세 비중은 41.49%임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0.29%p 높음
 - 반면 총세부담률의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6.35%p 낮음
 - 우리나라는 1년 1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 평균 총세부담률은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보다 7.8%p 낮음
- OECD 회원국을 과세제도별로 구분하여 평균 총세부담률을 비교하면 종합과세의 총세부담률이 가장 높고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순으로 낮아짐
- 나아가 전 유형의 과세제도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비중이 개인소득세 비중에 비하여 높음

〈표 V-7〉 OECD 회원국의 과세제도 유형별 평균 총세부담률(장기 보유)

(단위: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평균 총세부담률	41.49	40.72	41.31	22.5
법인세 비중	53.92	56	67.93	100
개인소득세 비중	46.08	44	41.31	0

출처: 〈표 V-8〉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V-8〉 2016년 OECD 국가의 장기 보유한 주식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 현황(2016년 12월 기준)

국가	과세방식	과세 대상 소득	범인세 세율	범인세 (a)	범인세 후소득	과세대상 소득비용	명목자 본이득	자본 이득 세율	자본 이득세 (b)	원천 징수 세율	원천 징수액 (c)	개인세후 소득	총세부담 (100-개인세 후소득)	총세부담액 중 개인 비중 (b 또는 c/총 세부담)
호주	종합	100	30%	30	70	0.5	35	45%	15.75			54.25	45.75%	34.42%
오스트리아	분리	100	25%	25	75	1	75			27.5%	20.625	54.375	45.625%	45.21%
벨기에	비과세	100	33%	33	67	1	67	0%	0			67	33%	0%
캐나다	종합	100	15%	15	85	0.5	42.5	33%	14.03			70.98	29.03%	48.32%
칠레	분류	100	24%	24	76	1	76	20%	15.2			60.8	39.2%	25%
체코	종합	100	19%	19	81	1	81	15%	12.15			68.85	31.15%	39%
덴마크	분류	100	22%	22	78	1	78	42%	32.76			45.24	54.76%	59.82%
에스토니아	종합	100	20%	20	80	1	80	20%	16			64	36%	44.44%
핀란드	분류	100	20%	20	80	1	80	34%	27.2			52.8	47.2%	57.63%
프랑스	종합	100	33.33%	33.33	66.67	1	66.67	45%	30.00			36.67	63.33%	47.37%
독일	종합	100	15%	15	85	1	85	45%	38.25			46.75	53.25%	71.83%
그리스	분류	100	29%	29	71	1	71	15%	10.65			60.35	39.65%	26.86%
헝가리	종합	100	19%	19	81	1	81	15%	12.15			68.85	31.15%	39%
아이슬란드	분류	100	20%	20	80	1	80	20%	16			64.00	36%	44.44%
아일랜드	분류	100	12.5%	12.5	87.5	1	87.5	33%	28.88			58.63	41.38%	69.79%
이스라엘	분류	100	25%	25	75	1	75	25%	18.75			56.25	43.75%	42.86%
이탈리아	분류	100	27.5%	27.5	72.5	1	72.5	26%	18.85			53.65	46.35%	40.67%
일본	신고분리 (분류)	100	23.4%	23.4	76.6	1	76.6	15%	11.49			65.11	34.89%	32.93%
대한민국	분류	100	22%	22	78	1	78	20%	15.6			62.4	37.6%	41.49%

〈표 V-8〉의 계속

라트비아	분류	100	15%	15	85	1	85	15%	12.75	72.25	27.75%	45.95%
룩셈부르크	비과세	100	21%	21	79	1	79	0%	0	79	21%	0%
멕시코	분리	100	30%	30	70	1	70		10%	63	37%	18.92%
네덜란드	비과세	100	25%	25	75	1	75			75	25%	0%
뉴질랜드	비과세	100	28%	28	72	1	72			72	28%	0%
노르웨이	종합	100	25%	25	75	1	75	25%	18.75	56.25	43.75%	42.86%
폴란드	분류	100	19%	19	81	1	81	19%	15.39	65.61	34.39%	44.75%
포르투갈	종합	100	21%	21	79	0.5	39.5	48%	18.96	60.04	39.96%	47.45%
슬로바키아	비과세	100	22%	22	78	1	78	0%	0	78	22%	0%
슬로베니아	분류	100	17%	17	83	1	83	25%	20.75	62.25	37.75%	54.97%
스페인	분류	100	25%	25	75	1	75	23%	17.25	57.75	42.25%	40.83%
스웨덴	분류	100	22%	22	78	1	78	30%	23.4	54.6	45.4%	51.54%
스위스	비과세	100	8.5%	8.5	91.5	1	91.5			91.5	8.5%	0%
터키	비과세	100	20%	20	80	1	80			80	20%	0%
영국	분류	100	20%	20	80	1	80	20%	16	64	36%	44.44%
미국	분류	100	35%	35	65	1	65	20%	13	52	48%	27.08%
OECD 평균											37.31%	35.14%

주: 1. 대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함
 2. 포르투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리과세 원칙이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 선택 시 최고세율 48%가 적용되지만 과세대상 소득비율이 0.5로 순이익의 50%만 과세되어 종합과세 시 세부담이 분리과세 시보다 낮으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3. 노르웨이의 경우 본 세부담 산정 시 cost price of share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shielding deduction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25%(2016년 이전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적용하는 가산율을 자본이익의 경우는 IBFD상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본 세부담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자료: IBFD(www.ibfd.org); Harding, 전제서: 흥병교 · 이상엽, 전제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VI. 최근 금융소득세제 개편 국가들의 제도 변천 개요

□ 본 장에서는 OECD 회원국 중 2000년 이후 금융소득세제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나라들의 제도 변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일본⁸²⁾

□ 일본은 2003년 이후 주식이나 주식투자신탁을 통한 금융자산의 증가를 위하여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추진함

○ 그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높은 저축률을 통한 금융자산의 증가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함

○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는 조세 중립성과 세제 간소화를 목적으로 금융상품별 과세방식을 균등화하고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려는 구조개혁⁸³⁾

○ 세제조사회는 1997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제시하였으나 2003년의 세제개혁은 근로소득세제의 개편을 담고 있지 않아 이원적 소득세제와는 거리가 있음

□ 2003년 이전 일본은 1947년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차익 모두 종합과세하였지만,⁸⁴⁾ 이후 항목별로 세제를 개정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 이자소득은 1988년부터 단일세율(20%)로 원천분리과세되었음⁸⁵⁾

82) 본 장의 일본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 홍범교·이상엽(2013)를 인용·참고하여 작성함

83) 오윤·임동원, 전게서, pp. 73~75.

84) 오윤·임동원, 상게서, pp. 73~75.

85) 소득세의 세율은 15%이며 도부현민세의 세율은 5%임. <http://jpn-tokyo.mofat.go.kr/webmodule/>

- 주식양도차익은 1953년부터 비과세하였지만 1989년부터 전면 과세되기 시작함
 - 1989년부터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납세자는 신고분리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2003년 개정 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차익 상호 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음

- 2003년 조세개혁 이후 금융소득별 과세방식의 균등화 및 손익통산 범위의 확대를 시작함
 -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여타의 금융소득과 같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 시작⁸⁶⁾ (2007년 후 적용)⁸⁷⁾
 - 다만 대주주의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2003~2007년) 10%의 세율로 과세함⁸⁸⁾

- 2008년 개정으로 2009년부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을 모두 단일세율(20%)로 분리과세하며 손익통산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음⁸⁹⁾
 - 주식양도손실과 배당소득, 공모주투신의 수익분배금과 양도손실, 주식양도손익과 공사채양도손익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였음

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164&seqno=585017&c=&t=&pagenum=149&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검색일자: 2017. 3. 7.)

86) 홍범교·이상엽, 전계서, pp. 70~75.

87) Naoki Oka(2003).

88) Naoki Oka, 상계서.

89) 오윤·임동원, 전계서; 홍범교·이상엽, 전계서; 홍범교·김진수, 전계서

〈표 VI-1〉 일본의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

상품구분		과세현황
채무증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소득세(원천징수): 15% + 지방세: 5%] = 20%
채무 및 지분증권	배당소득	상장주식, 공모주식투자신탁 등: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분리과세(신고불요): 20% (10%, ~2013.12.) - 종합과세: 소득세 5~40% + 주민세 10% - 발행주식 중 3% 이상을 보유한 자는 제외 (대주주 제외) 이외의 주식: 종합과세 (소득세 5~40% + 주민세 10%)
	자본이득	신고분리과세: 20%(소득세: 15% + 개인주민세: 5%) 채권양도차익은 비과세

출처: 오윤·임동원(2013), p. 74에서 발췌함.

2. 독일⁹⁰⁾

- 독일은 2008년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법개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독일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임⁹¹⁾
 - 법인세율을 26.38%에서 15.38%로 인하
 - 5.5%의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포함
 - 법인세 과세기반의 확대
 - 과소자본세제(thin-capitalization tax rules)의 개정, 독일 지방영업세(German local business tax)의 공제제도 폐지 등
- 독일은 이와 함께 국외 자본이탈 방지와 금융소득세제의 단순화 목적으로 독일식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 “소득에 대한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투자, 자본축적, GDP 및 가계소비 증대”를 위한 목적도 부수적으로 포함

90) 오윤·임동원(2013), pp. 71~72을 참고하여 정리

91) Eichfelder & Lau(2014), p. 5

- 단, 다른 2008년 세법개정 사항과는 달리 2009년 1월부터 시행
- 2008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다만, 배당소득의 50%는 비과세
 - 주식 자본이득의 경우 1% 이상 지분 및 최근 5년 이내 어느 시점에 1%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이득의 50%를 종합과세(50%는 비과세)
 - 1% 미만 1년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본소득’의 개념을 창설하고 분리과세하도록 개정
 - 자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의미
 -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 5.5%의 연대세를 포함하는 경우 총 26.375%로 원천징수
 - 부분과세 및 비과세 제도 폐지
 - 과거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50% 부분과세하였으나 총액 과세
 - 개인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던 1% 미만 1년 이상 보유 주식 자본이득도 과세
 - 자본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1년에 801유로(부부는 1,602유로) 까지 공제
 - 저소득 납세자에게 선택적 종합과세 허용

〈표 VI-2〉 독일의 2008년 세법개정 전·후 자본소득 과세방법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소득세율	50% 공제	소득세율	50% 공제
개정 전	종합과세 (최고 45%)	종합과세 (최고 45%)	○	종합과세 (최고 45%)	○
개정 후	분리과세(25%)	분리과세(25%)	X	분리과세(25%)	X

출처: 오윤·임동원(2013)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프랑스

- 프랑스는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인상하고, 투자소득 및 주식의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변경함⁹²⁾
 - 프랑스는 EU에서 재정적자를 GDP의 3%대로 낮출 것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적 세수 확충이 필요했으며 2013년 세법개정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음⁹³⁾
 - 법인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계획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41%에서 45%로 인상함
- 프랑스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자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함
 - 세법개정 이전에는 이자 및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4%,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1%의 단일세율 적용 가능

〈표 VI-3〉 프랑스의 2013년 세법개정 전·후 자본소득 과세방법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소득세율	40% 공제	인별공제	
개정 전	24% 단일세율 선택 가능 그 외 종합과세(최고 41%)	21% 단일세율 선택 가능	×	○	24% 단일세율
		그 외 종합과세 (최고 41%)	○	○	
개정 후	2,000유로 이하: 24% 2,000유로 초과: 종합과세(최고 45%)	종합과세(최고 45%)	○	×	종합과세 (최고 45%)

주: 1. 프랑스는 배당수입금액에서 40%를 공제한 이후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함
 2. 개정 전에는 배당수입금액에서 인별 1,525유로(부부는 3,050유로)를 소득공제함
 출처: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74282/french-finance-bill-for-2013-and-amended-finance-bill-for-2012-lost-in-taxation>(검색일자: 2017.1.18.)

92)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프랑스의-2013-재정법/521194(검색일자: 2017.1.18.)

93) <http://us.practicallaw.com/0-523-4273?q=&qp=&qo=&qe=>(검색일자: 2017.1.18.)
<http://www.nytimes.com/2012/09/29/world/europe/hollandes-new-budget-focuses-on-cutting-frances-deficit.html>(검색일자: 2017.1.18.)

- 프랑스는 주식의 자본이득을 종합과세함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
 - 결집효과의 완화를 위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자본이득의 20~4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표 VI-4〉 프랑스의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공제율

(단위: %)

보유기간	공제율
2년 ~ 4년	20
4년 ~ 6년	30
6년 ~	40

출처: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74282/french-finance-bill-for-2013-and-amended-finance-bill-for-2012-lost-in-taxation>(검색일자: 2017.1.18.)

4. 영국⁹⁴⁾

- 영국은 개인의 자본이득 과세를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대폭 개편함
 - 세율구조의 변경, 각종 공제규정의 폐지 등이 이루어짐
- 누진과세에서 단일세율 체제로의 전환
 - 세법개정 전에는 종합소득세율 중 저축세율을 이용하여 자본이득 과세
 - 소득구간에 따라 10%, 20%, 40%의 세율 적용
 - 세법개정을 통해 자본이득세법과 소득세법의 연결고리를 끊고 18%의 단일세율 적용
 - 그러나 공정과세 및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2010년 6월 23일 이후부터는 다시 소득세법과 연계하여 고세율·추가세율구간 대상자에게 28% 세율 적용⁹⁵⁾

94) 박명호·기은선·정희선(2008), pp. 74~9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me-tax-changes-to-dividend-taxation>(검색일자: 2017.1.18.)을 참고하여 정리

- 2016년 4월 이후부터는 투자촉진 목적으로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소득구간별 각각 8%p를 인하한 10%, 20% 세율 적용

□ 물가연동공제, 체감공제 및 절반공제 규정 폐지

-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각종 공제규정 폐지
- (물가연동공제 규정) 1998년 3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취득가액 조정
- (체감공제 규정) 1998년 3월 31일 이후 취득자산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자산의 자본이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유사
- (절반공제 규정) 1982년 3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을 1982년 3월 31일부터 1988년 4월 6일 사이 양도하고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되는 자본이득 중 절반 공제

□ 사업공제규정의 신설

- 체감공제 규정의 폐지 이후 사업용 자산 양도거래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설
- 사업공제는 사업 양도 또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본이득 중 최초 100만 파운드⁹⁵⁾의 유효세율이 10%가 되도록 자본이득 중 일부 공제
-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한 '인적회사(personal company)'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가능

- 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더 낮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6년 4월 6일자로 배당소득 과세체계 변경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020년까지 17%로 인하 계획

95) HM Treasury, *Budget 2010*, p.32

96) 2016년 말 현재는 최초 1천만파운드

-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변동 없음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해소방법 및 배당세율 변경
- 세법개정을 통해 배당세제가 좀 더 단순·공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법개정 이전에는 배당세액공제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배당소득공제 방식으로 대체함
 - 개정 전, 납세자는 수령한 배당금의 9분의 1에 상당하는 배당가산액을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
 - 개정 후에는 배당소득세액공제 대신 수령한 배당금에서 인당 5,000파운드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 계산

- 이에 더하여, 배당소득세율의 최저·최고세율 변경(〈표 VI-5〉 참조)
 - 기본세율 구간은 2.5%p 인하하고 추가세율 구간은 0.6%p 인상
 - 고세율 구간은 변동 없음

〈표 VI-5〉 영국의 2016년 세법개정 전·후 배당소득세율

(단위: %)

과세구간	배당소득세율		비저축소득세율
	개정 전	개정 후	
기본세율 구간	10	7.5	20
고세율 구간	32.5	32.5	40
추가세율 구간	37.5	38.1	45

출처: 영국 국세청(검색일자: 2017.1.18.)

-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각 구간별 배당유효세율은 7.5%p 인상되며 2021년까지 약 6.7억 파운드의 세수 증대 예상
 - 개정 전 약 180만명이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약 200만명이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

- 주로 현저한 규모의 배당소득이 있는 자, 절세 목적으로 근로소득을 배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납세자의 세부담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전체 납세자의 95%(또는 배당수입금액이 있는 납세자의 약 4분의 3 이상)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하여 혜택을 받거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배당세제 변경을 통하여 약 100만명 이상 납세자의 세부담 절감 기대

5. 슬로베니아⁹⁷⁾

- OECD 회원국 중 슬로베니아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소득에 큰 규모의 조세개혁을 점진적으로 이행한 국가임
 - 그 배경에는 1991년 슬로베니아의 독립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2004년 EU 가입을 위한 준비, 2007년 유로화 채택으로 야기된 경제위기가 있음
 - 금융소득에 관련된 조세개혁은 2005~2006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7년부터는 그 밖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제 변화를 추구함
- 슬로베니아는 1991년 개인소득에 5단계의 누진세율(19%, 28%, 35%, 40%, 45%)로 과세하는 조세개혁을 하였고 금융소득에 관하여는 대체로 과세하지 않음⁹⁸⁾
 - 금융소득 중 은행예치금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이후 2006년 이원적 소득세제를 채택하여 금융소득 중 이자와 배당은 단일비례세율(20%)로, 자본이득은 보유기간에 따라 복수비례세율(5%~20%)로 구분하여 과세

97) 본 장의 슬로베니아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 Boris Majcen et al.(2011)과 OECD(2009), pp.51~88을 인용 및 참조하여 작성함.

98) OECD, 상계서, 1994년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6단계(17%, 35%, 37%, 40%, 45%, 50%)로 개정함.

- 다만 2006~2007년 증에만 이자소득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 한편 자본이득은 보유기간이 20년이 경과하면 자본이득세를 전액 면제함
 - 위와 같은 변화는 1990년대 단일세제가 대세였던 동유럽에 속하던 슬로베니아가 EU로 편입하면서 조세제도를 서구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임
- 2007년에는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50%에서 41%로 인하하며, 조세행정을 보다 단순화함
-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5단계(2005년, 16%, 33%, 37%, 41%, 50%)에서 3단계(16%, 27%, 41%)로 개정함
 - 참고로 EU 국가들의 최고한계세율의 평균값은 1995년 47.3%에서 2010년 37.5%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08년에는 일반세액공제(general tax allowance) 금액을 납세자의 개인소득에 따라서 세 단계로 달리하여 저소득층일수록 공제금액을 늘려줌
- 이는 2008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임

VII.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이자소득

1) 이자소득 과세제도

-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은 실제 지급된 이자액을 기준으로 그 전부나 일부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함
 - 다만 네덜란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의 투자자산의 시가에 법정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융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실지금액에 과세하는 경우는 그 전액에 과세하는 경우, 전액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범위 초과 시 전액을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됨

- 종합과세제도는 소득의 원천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OECD 회원국 중 16개국이 채택
 - 이 중에서 2천만원을 기준으로 비교과세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5개국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를 병행함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9개국이 예납적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분류과세제도는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며 OECD 회원국 중 총 4개국이 채택
 - OECD 회원국 중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대체로 단일세율로 과세하지만 스페인의 경우는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함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분류과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해보면 스웨덴을 제외하고 분류과세율이 종합소득세율의 최저세율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네덜란드를 제외한 3개국은 분리과세율과 동일한 또는 최저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도 시행함

-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경우 배당소득, 주식양도차익 등 다른 금융소득과 그 발생원천을 동일하게 보아 합산하여 분류과세함
 -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이자소득을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차익과 합산하여 분류과세함
 - 네덜란드는 이자소득을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분류과세함(주식양도차익은 제외)

- 분리과세제도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면 종합소득 신고 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제도로 OECD 회원국 중 총 20개국이 채택
 -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한 경우 터키를 제외하고 모두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대체로 종합소득세율의 최저 1~2번째 세율 구간과 유사한 수준의 세율로 과세함
 -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한 경우라도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대체로 종합소득세율의 최저세율보다 분리과세율이 높은 경우임

- OECD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와 멕시코는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제도를 채택함
 - 멕시코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금융기관 예치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의 5배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비과세한다고 볼 수 있음

- 2가지 이상 과세제도를 병행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소득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함
 - 우리나라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 멕시코는 납세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에 한정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10만페소까지는 분리과세,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2) OECD 회원국의 이자소득의 세부담 비교

- 일정한 가정하에 OECD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소득 세부담을 비교함
 - 국세 중심의 명목세율을 사용하여 각국 고소득층 납세자의 2016년도 세부담을 비교함
 - 납세자에게 종합·분류·분리과세로 복수비례세율 적용 시에는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OECD 평균 총세부담률은 24.17%이며, 우리나라는 238%로 호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칠레,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부담률을 가짐
 -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분석임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분리과세하는 경우 14%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10.17%p 낮음
- OECD 회원국을 과세제도별로 구분하여 평균 총세부담률을 비교하면 종합과세의 총세부담률(36%)이 가장 높고 분류과세(25.7%), 분리과세(21.8%), 비과세 순으로 낮아짐

나. 배당소득

1) 배당소득 과세제도

- OECD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령한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며,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를 채택한 국가 중 일부는 필요경비를 공제함
- OECD 35개 회원국은 배당소득 과세방식으로 종합과세를 가장 많이 채택하였으며, 분리과세, 분류과세 및 비과세 방식이 뒤따르고 있음
 - 종합과세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이 채택함
 - 분류과세제도는 주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 확인됨
 - 분리과세제도는 슬로베니아, 체코 등 동유럽국가에서 많이 확인됨
- 배당소득에 대해 하나의 과세제도만을 채택한 국가도 있으나, 상당수의 국가들은 2가지 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한 16개 회원국 중 절반 정도가 종합과세제도 또는 분류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일본, 포르투갈은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와 터키는 납세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이탈리아는 지배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분과세방식, 임퓨테이션 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별도의 이중과세 완화 방법이 없음
 - 미국은 별도의 이중과세 완화 방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적격배당에 대해서는 분류과

세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효과를 완화하고 있음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회원국은 이중과세 효과 완화방법으로 부분과세방식과 임퓨테이션 방식을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퓨테이션 방식이 이중과세 효과를 100% 해소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임퓨테이션 방식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인 경우에 사용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누진세율인 경우에는 이중과세 효과의 100% 해소가 어려움
 - 이탈리아는 부분과세방식에 의하여 이중과세 효과를 100% 해소함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다수의 회원국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을 하나의 범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북유럽국가는 자본소득을 하나의 범주로 보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은 배당소득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음

-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한 8개 회원국 중 덴마크를 포함한 4개국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로 과세하나 핀란드를 포함한 4개국은 소득규모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 평균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은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종합소득 최고세율의 약 80% 수준으로 과세함
 - 다만, 종합소득에 대해서 추가 과세되는 지방세 등을 감안하면 배당소득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추정됨

- OECD 회원국의 분리과세율은 일반적으로 누진세율 형태를 가지는 종합소득세율의 최저 1~2번째 구간의 세율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최저 구간의 세율보다 높은 국가의 상당수는 납세자에게 과세방식의 선택권 부여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일본, 포르투갈은 납세자가 분리과세가 불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분리과세율이 종합과세의 최저 구간보다 높지만 분리과세 적용 납세자의 종합과세 선택권이 없음

2)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 세부담 비교

-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OECD 평균 총세부담률은 39.67%이며, 이 중 법인세 비중은 59%, 소득세 비중은 41%임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법인세 비중이 소득세 비중에 비하여 높으며, 이는 소득세율이 법인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방법을 두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46.3%이며, 법인세 비중은 47%, 소득세 비중은 53%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임
 - 종합과세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6.63%p 높으며 총세부담률의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12%p 낮음
 -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보면 총세부담률은 32.9%, 법인세 비중은 67%, 소득세 비중은 33%로 OECD 회원국 중 분리과세 채택국의 평균 총세부담률보다 6.1%p 낮으며, 법인세 비중은 10%p 높음
-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제거효과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종합과세방식 국가가 이중과세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 OECD 회원국 중 호주, 칠레,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뉴질랜드는 이중과세효과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있으며, 체코, 헝가리, 우리나라, 프랑스, 아일랜드, 미국,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이중과세효과의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편에 해당

-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임퓨테이션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 효과를 완화하나, 누진체계를 갖는 법인세율의 최저구간세율을 바탕으로 임퓨테이션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이중과세 완화효과가 크지 않은 편임

다. 주식 자본이득

1) 자본이득 과세제도

- OECD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차익 산정 시 주식양도가액에서 주식매입비용,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함
 - 다만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는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실질 자본이득에 과세하며 이 중 아일랜드는 2002년까지의 인플레이션만 고려함
- OECD 회원국 중에는 주식양도차익에 과세 시 과세대상 금액 또는 자본이득세율을 조정하는 국가가 있음
 - OECD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차익의 전부에 과세하나, 캐나다와 포르투갈은 조건 없이 주식양도차익의 일정률에 과세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함
 - 반면에 OECD 회원국 중 호주, 벨기에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거나 과세제도 자체를 달리하는 국가도 있음
 - 한편 이탈리아는 12개월 중 의결권이나 회사자본을 일정비율 이상 양도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본이득의 49.72%만을 과세함
- OECD 회원국은 대체로 주식처분손실을 주식양도차익, 자본이득, 금융소득과 상계되도록 하며 이월공제를 허용함
 -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자본이득에 비과세하는 경우임
 - 네덜란드는 이례적으로 자본손실의 성격을 공제액(credit)으로 전환하여 근로소득이

속한 Box 1 카테고리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는 이월공제뿐만 아니라 소급공제까지도 허용함
- 자본이득세에서 종합과세제도는 순주식양도차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단일비례세율이나 복수비례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OECD 회원국 중 총 15개국이 채택함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체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는 단일비례세율로 과세하며 그 외의 국가는 복수비례세율로 과세함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등 총 20개국임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은 복수비례세율로 과세하며 그 외의 국가들은 대체로 단일비례세율로 과세함
 -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스페인을 제외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하여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않음
- OECD 회원국 중 자본이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총 6개국임
 - OECD 회원국의 분리과세율은 일반적으로 단일세율의 형태를 가지며 종합과세세율의 최저 1~2 세율 구간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됨
 -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하도록 한 국가는 총 2개국으로 독일과 포르투갈이 있음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총 7개국으로 이 중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비과세함

2) 과세대상금액 또는 세율의 조정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국가는 호주, 프랑스, 슬로베니아, 터키 등 총 4개국임
 - 프랑스와 슬로베니아는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금액 또는 세율의 조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하는 국가임
 -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국가는 주식의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차익에 대하여 인하된 세율로 과세함
 - 반면 오스트리아는 2012년, 독일은 2009년에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주식의 직·간접 보유비율에 따라 지배주주에 해당 시 과세금액 또는 세율을 조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프랑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가 있음
 -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납세자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율을 일정한 경우 인상하여 과세함
 -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납세자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 금액 또는 세율을 일정한 경우 감면 또는 인하하여 과세함
 - 반면 오스트리아는 2012년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가 가장 복잡한 양상을 나타냄
 - 세제의 복잡성은 조세 중립성 및 조세제도 간소화를 저해하며, 조세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국가는 칠레, 체코 등 총 6개국임
-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칠레, 체코, 덴마크, 멕시코는 주식의 상장·비상장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국가임
- 스웨덴은 주식의 상장·비상장에 따라 취득가액·취득비용 산정을 달리함

3) OECD 회원국의 자본이득 세부담 비교

- 주식 자본이득세는 개인단계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이지만 법인세 차감 후 기업순이익을 주식양도차익으로 가정하고 OECD 회원국의 세부담을 산정함
 - 자본이득세율은 국세 중심의 명목세율로 하고 각국 고소득층 납세자의 2016년도 세부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정함
 - 납세자에게 종합/분류과세로 복수비례세율 적용 시 최고세율을 적용함
 - 납세자는 첫 번째 사례에서는 단기(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을, 두 번째 사례에서는 장기(1년 1일)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함
 - 납세자는 처분 직전 5년 중 지분율 1.01%를 보유한 지배주주임을 가정함
 - 상장/비상장에 따라 과세제도가 달라지는 경우 상장주식을 전제로 함
- 단기 보유 주식처분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OECD 평균 총세부담률은 40.87%이며, 법인세 비중은 58.57%, 개인소득세 비중은 41.43%임
- 단기 보유 주식처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45.4%이며, 법인세 비중은 48.46%, 개인소득세 비중은 51.54%임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4.53%p 높음
 - 반면 총세부담률의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10.11%p 낮음

- 장기 보유 주식처분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OECD 평균 총세부담률은 37.31%이며, 이 중 법인세 비중은 64.86%, 개인소득세 비중은 35.14%임
 - OECD 회원국의 장기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 평균 총세부담률은 단기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보다 3.56%p 낮음
 - 이러한 결과는 단기 보유주식에 대하여 벨기에처럼 투기소득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장기 보유 주식처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37.6%이며, 법인세 비중은 58.51%, 개인소득세 비중은 41.49%임
 - 우리나라의 총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0.29%p 높음
 - 반면 총세부담률의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6.35%p 낮음
 - 우리나라는 장기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 평균 총세부담률은 단기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보다 7.8%p 낮음

라. 소결

1) 금융소득 과세제도

- <표 VII-1>에 정리된 바와 같이 35개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은 모든 금융소득을 동일 과세제도 내에서 과세하고 있음
 -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북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 스웨덴은 모든 금융소득을 동일 과세제도 내에서 과세하고 있음
 - 다만, 핀란드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율 분리과세
 - 제VI장에서 검토된 금융소득세제의 개편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한 4개국은 금융소득을 동일 과세제도 및 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개정하였음
 -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효과, 주식 자본이득의 결집효과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과세 제도 등은 추가적으로 도입

- 모든 금융소득을 동일 과세제도 내에서 과세하는 15개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4개국은 종합과세하는 반면, 나머지 11개국은 분류·분리과세하고 있음
 - 다수의 국가가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에 의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1인당 GNI 수준이 비슷한 일본, 이스라엘의 경우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일반주주 기준이며 대주주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은 이자와 배당은 같은 과세제도에 의하여 과세하나 주식의 자본이득은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음
 - 칠레, 우리나라, 뉴질랜드, 스위스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반면, 그 외 5개 국가는 종합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소득세율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을 분류·분리과세하고 있음
 - (분리과세) 벨기에, 체코, 라트비아
 - (분류과세) 네덜란드(일반주주)
 - (비과세) 에스토니아
 - 헝가리는 이자·배당소득은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나 주식 자본이득은 1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벨기에, 칠레, 체코(소액주주, 3년 초과 양도), 네덜란드(일반주주), 뉴질랜드, 스위스는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거나 이자·배당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함

- 덴마크, 핀란드 등 총 5개국은 배당소득과 주식의 자본이득을 동일 과세제도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음
 - 이 중 2개국은 이자에 대하여 더 낮은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나 3개국은 더 높은 개인 소득세율 적용
 - 덴마크, 핀란드는 이자소득에 대해 배당소득 등에 비하여 낮은 이자소득세율 적용
 - 네덜란드(지배주주), 슬로바키아, 미국은 배당소득 등에 비하여 높은 이자세율 적용

〈표 VII-1〉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분류

모두 같은 경우	이자, 배당 동일	배당, 자본 동일	모두 다른 경우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일반주주), 이탈리아(일반주주), 일본(일반주주),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칠레(1년 이상),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대한민국, 라트비아, 네덜란드(일반주주), 뉴질랜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지배주주), 슬로바키아(1년 초과, 상장), 미국(1년 초과, 적격배당)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상장주식), 터키, 영국

주: 1. 분류과세·분리과세의 경우 세율이 동일한 경우 같은 과세제도로 분류함
 2. 오스트리아는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에 대해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은 배당·주식 자본이득과 동일한 27%이므로 동일 과세제도로 분류함
 3. 벨기에의 경우 특정금융계좌가 아닌 일반적 이자소득세율(25%)에 의한 비교
 출처: 〈표 VII-2〉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은 하나의 금융소득 범주 내에서도 2가지 이상의 과세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주식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며, 주식 보유기간, 주식발행법인의 상장 여부 또는 납세자가 주식발행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주로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납세자에게 종합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2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분리과세 국가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등의 경우 납세자가 종합과세 선택 가능
 - 반면,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 이탈리아, 일본은 납세자의 소득규모 등에 따라 과세 제도를 달리 적용함
 -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는 납세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과세제도 구분
 - 이탈리아는 납세자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제도 구분
 - 일본은 지배주주 및 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제도 구분

〈표 Ⅶ-2〉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요약

국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0~45%) • 임퓨테이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0~45%) • 1년 초과 보유 시 금액의 50% 감면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25%) •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종합과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27.5%) •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종합과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27.5%)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25~50%) •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종합과세 가능(금융기관 예치금, 15%; 그 외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27%) •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종합과세 가능 • 가상이자비용공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원칙 • 6개월 이내 양도 시 분류과세(33%)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15~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15~33%) • 임퓨테이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자본이득금액의 50%만 종합과세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0~40%) • 임퓨테이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미만 보유주식 종합과세 • 지배주주(상장주식 10% 이상 보유)에게 종합과세 • 비상장주식의 종합과세 • 그 밖의 경우는 분류과세(20%) • 인플레이션 조정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15%) • 소액주주(직전 2개월 중 5% 이하)의 3년 초과 양도: 비과세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9.0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분류과세(42%) • 주식소득(배당, 주식 자본이득) 50,600크로네 이하: 분리과세(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과세(27%, 42%) • 2006.1.1. 이전 취득 상장주식: 비과세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 금융기관 또는 그 고정사업장이 EEA 밖에 소재하면 종합과세(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20%)

〈표 Ⅵ-2〉의 계속

국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 - 상장주식: 배당의 85% 자본소득(30, 34%)으로 과세 - 비상장주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익률 8% 이내: 배당의 25%(150,000유로 초과)의 경우는 85%를 자본소득(30, 34%)으로 과세 ② 수익률 8% 초과: 배당의 75%를 활동소득(6.5~31.75%)으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30%, 34%)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금의 60% 종합과세(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2년 초과~8년 50%, 8년 초과~65% - 지배주주(직전 5년 25% 초과) 및 중소기업 주주(지배권) 은퇴양도: 1년 초과~4년 50%, 4년 초과~8년 65%, 8년 초과~ 85%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25%)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종합과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25%)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종합과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25%)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종합과세 가능 •지배주주(5년 이내 1% 이상)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15%)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상장주식(0.5% 미만) 비과세

〈표 Ⅶ-2〉의 계속

국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15%)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20%)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2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33%)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 - 일반: 25% 지배주주(10% 이상):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25%) - 단, 지배주주(직전 12개월 중 10% 초과): 30% •인플레이션 조정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주주: 배당금의 49.72% 종합과세 •일반: 분리과세(26%) •가상이자비용공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 원칙(26%) •지배주주의 대량 양도: 자본이득의 49.72% 종합과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종합과세(5~45%), 배당세액공제 •상장법인 소액주주: 신고분리과세(15%) 선택가능 •소액배당: 원천분리과세(15%) 선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신고분리방식)(15%)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종합과세(6~38%)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종합과세(6~38%), 임puted이선 제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분류과세 - 일반: 20% - 중소기업 소액주주 양도: 10% - 대주주 1년 미만 양도: 30% •상장 소액주주 장내거래: 비과세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15%)

〈표 Ⅵ-2〉의 계속

국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금의 50% 종합과세(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주(직전 5년 중 1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내 양도: 종합과세(0~40%) - 6개월 초과 양도: 평균세율x0.5로 종합과세 •일반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내 양도: 종합과세(0~40%) - 6개월 초과 양도: 비과세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 원칙 •비과세: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소득이 최소근로소득의 5배 이하 •개인소득이 이자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100,000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한 분리과세(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1.92~35%) •임플테이션 제도 •분리과세(10%) 추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주식: 분리과세(10%) •비상장주식: 종합과세(1.92~35%) •인플테이션 조정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30%, box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주(5% 이상): 분류과세(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령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일반주주: 분류과세(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투자수익을 환산 간주 배당금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원칙 •지배주(5% 이상): 분류과세(25%)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10.5~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10.5~33%) •임플테이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배당모텔에 의해 산정된 간주 배당금의 115%를 과세표준으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general income category) (이원적 소득과세 체계)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과세(19%)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28%) •납세자가 종합과세로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종합과세(50% 과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과세(28%) •납세자가 종합과세로 선택 가능(순이득의 50%만 과세)

〈표 Ⅵ-2〉의 계속

국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슬로바키아	•분리과세(19%)	•비과세	•원칙: 종합과세 •상징주식 1년 초과 보유 후 처분 시 비과세
슬로베니아	•분리과세(25%)	•분리과세(25%)	•분류과세(25%) •보유기간에 따른 경감세율 적용 - 5~10년 10%, 10년~15년 5%, 20년~ 0%
스페인	•분류과세(19%~23%)	•분류과세(19, 21, 23%)	•분류과세(19, 21, 23%)
스웨덴	•분류과세(30%)	•분류과세(30%)	•분류과세(30%)
스위스	•종합과세(11.5%)	•종합과세(0~11.5%) - 10% 이상 지배주주는 배당금의 60%만 종합과세	•비과세
터키	•분리과세(10~15%)	•원칙: 배당금의 50% 종합과세 (15~35%) •동산소득, 부동산소득 및 급여소득 합계액이 30,000리라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5%) •가상이자비용공제 제도	•2006.1.1. 이전 취득 주식 - 1년 초과 양도(상장은 3개월): 비과세 - 1년 이하 양도: TRY 24,000 초과분 종합과세 •2006.1.1. 이후 취득 주식: - 상장주식: ① 1년 초과 양도 - 비과세 ② 1년 이내 양도 - 분리과세(0%) - 비상장주식: ① 2년 초과 양도 - 비과세 ② 2년 이내 양도 - 종합과세(인플레이션 조정)
영국	•종합과세적 성격을 갖는 분류과세(20~45%)	•분류과세(7.5, 32.5, 38.1%)	•분류과세(10, 20%)
미국	•종합과세(10~39.6%)	•원칙: 종합과세(10~39.6%) •적격배당: 분류과세(0, 15, 20%)	•1년 미만 보유 후 처분 시 종합과세 •1년 초과 보유 후 처분 시 분류과세

2) 금융소득 세부담

- 여기서는 각 국가의 금융소득 유형별 세부담 비교를 위해서 설정한 각 장의 가정에 추가하여 배당과 주식 자본이득의 경우 지분율 1.01%의 주주가 보유한 지 1년 1일(장기) 경과한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함⁹⁹⁾
 -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금융소득을 과세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중에서는 배당소득의 총세부담률이 가장 높고 주식 자본이득, 이자소득 순서로 높음
 - OECD 회원국의 평균 종합소득세율은 36.91%이고, 금융소득의 평균 총세부담률은 33.6%로 평균 종합소득세율의 약 91% 수준임
 - 다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지방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됨
 - OECD 회원국의 평균 총세부담률은 이자소득 24.17%, 배당소득 39.32%, 주식 자본이득 37.31%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국가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금융소득의 이동성 등을 감안하여 OECD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보임
 - 금융위기 이전에 북유럽국가, 일본, 독일 등에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여 금융소득을 일원화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에 의하여 금융소득 과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금융소득세율 인상
 - 프랑스는 2013년 이전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였으나 2013년부터 종합과세
 - 핀란드는 2012년에 금융소득의 최고 구간세율 인상
 - 오스트리아는 2015년에 분리과세율을 25%에서 27.5%로 인상

99) 따라서 100% 주주를 가정하고 세부담 분석을 한 제IV장의 OECD 평균 배당소득 총세부담률과는 일부 상이함

- 포르투갈은 2013년에 분리과세율을 26.5%에서 28%로 인상

- 총세부담률 측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자소득에 비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함
 - 호주, 칠레, 뉴질랜드를 제외한 32개 OECD 회원국은 이자의 총세부담률이 배당의 총세부담률보다 낮음
 - 호주, 칠레, 뉴질랜드는 이자와 배당의 총세부담률이 같음
 - 이는 배당의 이중과세 효과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점,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분류과세 제도의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의 총세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대다수의 회원국이 배당보다 주식 자본이득의 총세부담률이 낮거나 같음
 - 우리나라, 벨기에 등 13개국은 배당보다 주식 자본이득의 총세부담률이 낮음
 - 미국, 덴마크 등 15개국은 배당과 주식 자본이득의 총세부담률이 같음

- 우리나라와 같이 배당소득보다 주식 자본이득의 총세부담률이 낮은 국가 중 벨기에 등 총 6개국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당연 비과세국: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 조건부 비과세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벨기에, 룩셈부르크: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6개월 이내 주식양도는 과세
 - 네덜란드: 소액주주는 비과세, 지배주주는 분류과세

- 순수하게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금융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의 약 59% 수준이며, 금융소득 내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순서로 소득세율이 높음
 - OECD 회원국의 평균 종합소득세율은 36.91%이고 금융소득의 평균 개인 소득세율

은 21.64%임

- OECD 회원국의 평균 개인 소득세율은 이자소득 24.17%, 배당소득 21.66%, 주식 자본이득 19.07%임

- 부분과세 및 임퓨테이션 효과 등이 반영된 수정된 명목 소득세율(국세) 기준임

- 일본,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 총 10개국은 모든 금융소득의 소득세율(국세)이 동일함

- 독일은 소액주주의 경우 모든 금융소득의 소득세율이 동일함

(소액주주) 주식 자본이득 25% 분리과세, (그 외) 주식 자본이득 종합과세

- 오스트리아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금을 제외한 일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배당소득 및 주식의 자본이득과 동일한 27.5%임

- 포르투갈은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28%의 분리과세율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종합과세 가능

-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세율은 주식 자본이득세율보다 평균 2.59%p 높음

- 네덜란드(30%p), 벨기에(27%p)는 개인 소득세율 격차가 큰 편임

- 비과세국가를 제외하고는 독일(20%p), 프랑스(18%p), 영국(18.1%p)의 평균 배당소득세율과 주식 자본이득세율의 격차가 큰 편임

-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14개국은 배당소득세율과 주식 자본이득세율이 동일함

- <표 VII-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총세부담률 및 개인 소득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OECD 평균 및 OECD 회원국 중 분리과세 채택국의 평균보다 낮음

- 주식 자본이득이 과세되는 경우 총세부담률 및 개인 소득세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임

-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현황을 고려하여 보면, 배당소득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세부담률을 보이거나, 이자소득 및 주식 양도차익은 세부담률이 낮은 편임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배당소득은 약 69%가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이자소득은 약 9%만이 종합과세되고 있으며 주식 양도차익은 약 1.4%만 과세되고 있음

〈표 VII-3〉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개인 소득세율

구분	총세부담률		개인 소득세율	
	우리나라	OECD 평균	우리나라	OECD 평균
이자소득	38% (분리과세 14%)	24.17% (분리과세 국가 평균: 21.8%)	38% (분리과세 14%)	24.17%
배당소득	46.3% (분리과세 32.9%)	39.32% (분리과세 국가 평균: 39.0%)	31.18% (분리과세 14%)	21.66%
주식 자본이득	37.6%	37.31%	20%	19.07%

출처: [그림 VII-1], [그림 VII-2]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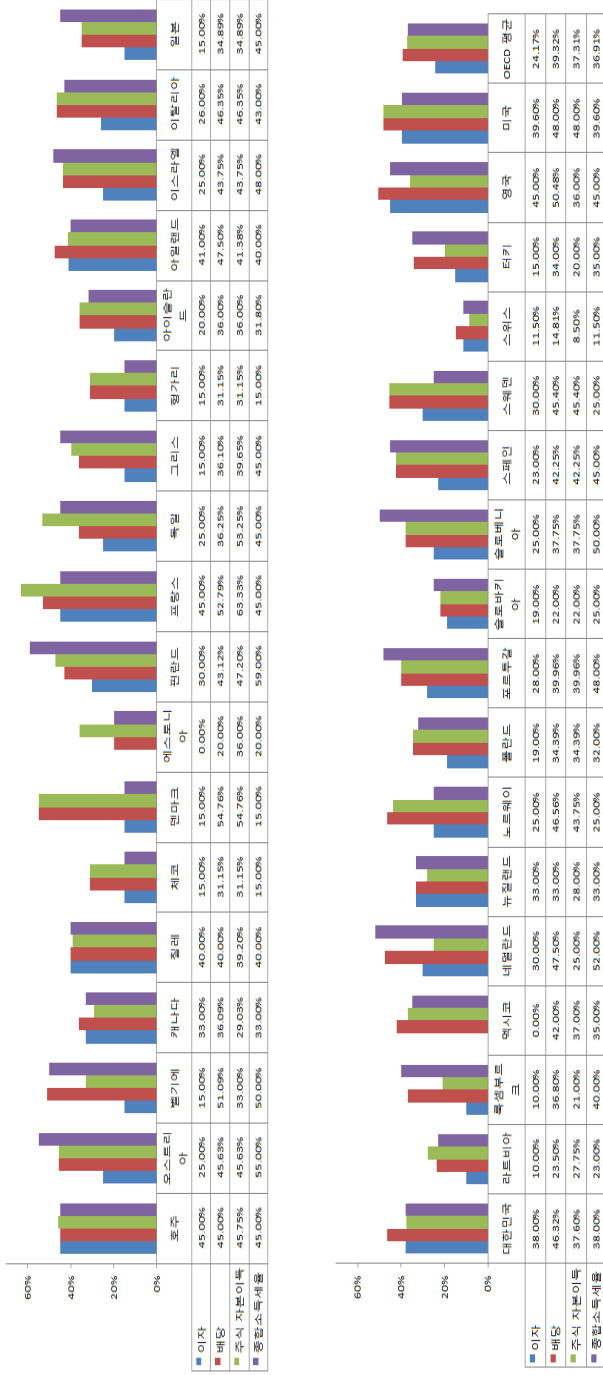
- 한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배당과 주식 자본이득의 세부담률에 있어 편차가 매우 큰 편임
-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는 주식 자본이득세 대비 총세부담률은 8.72%p, 개인 소득세율은 11.18%p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총세부담률은 2.01%p, 개인 소득세율은 2.59%p 차이가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각각의 차이는 약 4~5배 이상임
- 우리나라 주식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비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과 주식 자본이득의 세부담률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

〈표 VII-4〉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과 주식 자본이득세율의 차이

배당 \ 주식	일반과세(20%)	상장법인 소액주주(비과세)
분리과세	총세부담률: (-)4.7%p 개인 소득세율: (-) 6%p	총세부담률: 10.9%p 개인 소득세율: 14%p
종합과세	총세부담률: 8.72%p 개인 소득세율: 11.18%p	총세부담률: 24.32%p 개인 소득세율: 31.18%p

출처: [그림 VII-1], [그림 VII-2]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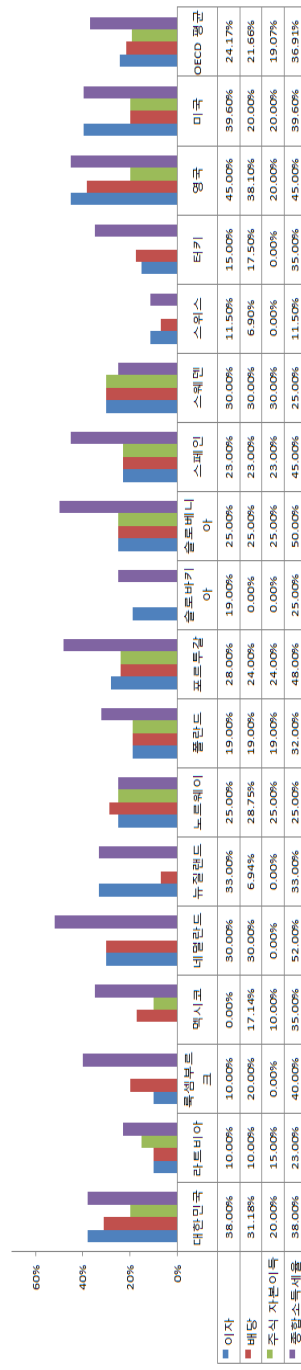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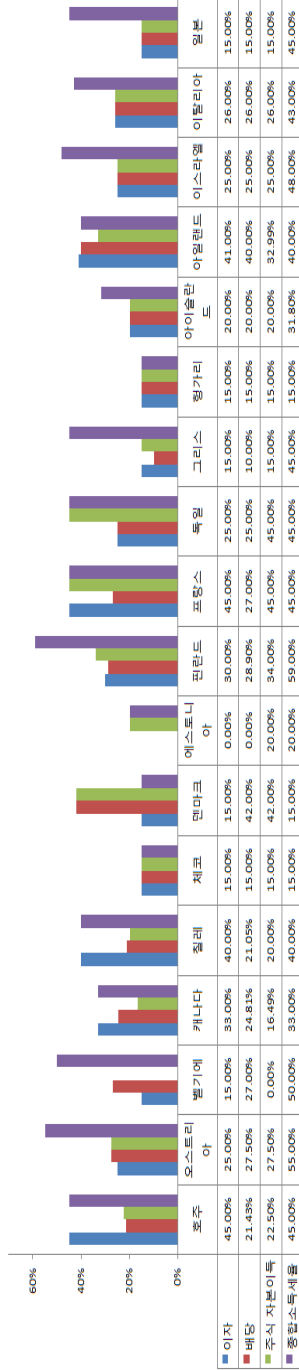
[그림 VI-1]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유형별 세부담(총세부담률)100)



출처: Harding(2013)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0) 배당소득(지분율 1.01% 주주)과 주식 자본이득(지분율 1.01% 주주가 1년 1일 후 양도 기준)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괄한 총세부담률 기준임

[그림 VII-2]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유형별 개인 소득세율(101)



출처: Harding(2013)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1) 배당소득(지분율 1.01% 주주)과 주식 자본이익(지분율 1.01% 주주가 1년 1일 후 양도 기준)은 부분과세 및 임퓨테이션 효과 등이 반영된 수정된 명목 소득세율(국세) 기준임

2. 시사점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상황을 배경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 최적이라 말할 수 없음
 - 다만, OECD 회원국이 운영하고 있는 과세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 내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가. 조세 중립성

-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도입 이후 큰 변동 없이 이자·배당소득 및 주식의 자본이득 관련 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함
 - 단,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금액은 분리과세
 - 주식의 자본이득은 열거된 특정 주식에 한정하여 분류과세방법에 의해 과세
-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의 보유소득(이자, 배당소득)과 처분소득에 대하여 과세체계를 달리함에 따라 세부담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표 VII-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보유소득인 배당소득의 총세부담률 및 개인 소득세율은 주식 자본이득의 총세부담률 및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음
-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평균값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결과이나 우리나라는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임
 - <표 VII-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OECD 회원국 평균은 배당소득세율과 주식 자본이득세율이 총세부담률은 2.01%p, 개인 소득세율은 2.59%p 차이 발생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주식 자본이득 비과세)이면서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를 보면 배당의 총세부담률 및 개인 소득세율이 10.9%p,

14%p 만큼 높음(〈표 VII-4〉 참조)

- 상장법인의 대주주이면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를 보면 배당의 총세부담률 및 개인 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 대비 8.72%p, 11.18%p만큼 높음

□ 이에 대하여 IMF와 OECD¹⁰²⁾ 및 선형연구¹⁰³⁾에서는 우리나라가 금융소득 종류별로 서로 다른 과세취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화방안(harmonization)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IMF와 OECD 및 선형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 제도 폐지 권고

○ IMF와 OECD는 “위와 같은 토대 위에서 종합과세를 철저히 시행하든지 아니면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

□ 실제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5개국은 모든 금융소득을 동일 과세제도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미국, 덴마크, 일본 등 14개국은 배당과 주식 자본이득의 총세부담률 및 개인 소득세율이 같음

○ 또한, 제VI장에서 다른 금융소득세제가 변경된 5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4개국도 금융소득을 동일 과세제도 및 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였음

○ 우리나라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의 폐지를 포함하여 금융자산의 보유소득과 처분소득의 세부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나. 과도한 비과세 및 저율의 분리과세 금융상품

□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자의 이자소득(29.07조원) 중 약 29%가 비과세되고 있으며 약 62%는 분리과세, 약 9%만이 종합과세되고 있음

102)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2/07/20120719148112.html>(검색일자: 2017.2.6.)

103) 홍범교 · 이상엽(2013), p.39; 오윤 · 임동원(2013), p. 86

- 이자소득의 약 10%는 당연 분리과세,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중 약 85%는 기준금액 테스트 결과 분리과세
- 우리나라 거주자의 배당소득(16.04조원) 중 약 11%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전체 배당소득의 약 69%가 종합과세되고 있음
- 한편, 주식 자본이득의 경우 2015년 우리나라 개인의 주식 전체 양도가액(1,502.29조원)의 약 1.4%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 상장주식 기준으로 보면 전체 양도가액의 약 0.49%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 즉,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관련 세제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주식 자본이득은 분류과세가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은 주로 분리과세 및 비과세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주식 자본이득은 비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경우 이자소득의 총세부담률은 14%, 배당소득은 46.32%, 주식 자본이득은 22%임¹⁰⁴⁾
- 이로 인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의 침식이 심각하며 수직적 형평성 달성 목적으로 도입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의문 제기
 - IMF 등 국제기구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를 포함하여 우리의 금융소득 과세 체계에 산재해 있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시급히 정리할 것을 권고¹⁰⁵⁾
 -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도입시점에 기본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최저세율인 10%로 인하하고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저축은 사실상 폐지할 계획이었음

104)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기준임.

105)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2/07/20120719148112.html>(검색일자: 2017.2.6.)

- 본 연구에서 OECD 회원국의 비과세·감면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OECD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단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 제V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비과세 폐지를 포함하여 금융소득세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진행하였음

- 따라서 현행 비과세 및 감면 금융상품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의 활용
 - 이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및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일률적 과세체계

-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의 최저 두 번째 구간세율과 유사한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는 다른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 2천만원 이하의 다른 소득은 6~1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4%의 세율이 적용됨
 -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 OECD 35개 회원국 중 납세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에 불과함
 - 멕시코는 납세자에게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100,000페소까지는 분리과세,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 단,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소득이 최소 근로소득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 터키는 납세자의 동산소득, 부동산소득 및 급여소득 합계액이 30,000리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 따라서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하의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금액 이하 납세자에게 종합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금융소득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 면제점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 기준금액 이하 납세자에 대한 종합과세 선택권 부여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¹⁰⁶⁾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 종합과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시
 - (판단근거) 납세자의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 조세징수비용의 과다한 증가, 금융권의 혼란 등
- 그러나 판결 이후 2013년 금융소득 기준금액의 인하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저변 확대 및 제도의 정착, 소득세 신고시스템의 개선, 금융전산시스템의 개선상황 등을 고려하면 재고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됨
 - 2010년 감사원에서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 종합과세 선택권 부여 등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¹⁰⁷⁾
 -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형평성 및 중립성 보완을 위해서 금융소득 비교과세제도의 폐지와 기준금액 이하 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선택권 부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장¹⁰⁸⁾

106) 헌재 2006. 11. 30. 2006헌마489

107) 감사원(2010), pp. 227~228

-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분리과세율이 종합소득세율의 최소 구간세율보다 높은 경우 납세자에게 종합과세 선택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음
 - 분리과세 국가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일본, 포르투갈 등의 경우 납세자가 종합과세 선택 가능

2)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점제도의 도입

- 기준금액 이하 납세자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이 제고되지만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하에서 금융소득 과세 면제점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분류과세국)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은 기준금액 이하 금융소득 비과세
 - 스페인은 저축소득이 1,600유로 이하인 경우 신고 불필요
 - 아이슬란드는 125,000크로나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네덜란드는 2016년 기준 금융자산 투자금액이 24,437유로 이하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영국은 각각 5,000파운드 이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분리과세국)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등은 기준금액 이하 금융소득 비과세
 - 벨기에는 1,880유로 이하의 이자소득 비과세
 - 독일은 801유로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룩셈부르크는 250유로 이하의 이자소득 비과세
 - 슬로베니아는 1,000유로 이하의 이자소득 비과세

-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의 큰 증가 없이 금융소득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중 약 85%가 기준금액 테스트 결과 분리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소득 과세 면제점제도의 도입으로 상당수의 금융소득 유효세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세원관리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 금융소득에 한하여 적용하고, 기존의 비과세·저율의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정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일례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소득에 한하여 과세면제 적용
 - 비과세·저율의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정비 없이 금융소득 과세 면제점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소득 대비 금융소득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져 조세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배당의 이중과세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은 편에 해당하는 바, 배당의 이중과세 효과 완화를 위한 개선 필요
 - 법인세율은 10~22%의 누진체제이나 배당 가산액은 10%의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중과세의 완벽한 해소가 어려움

- OECD 회원국 중 종합과세방식 채택국은 이중과세 효과 완화방법으로 부분과세방식과 임퓨테이션 방식을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퓨테이션 방식이 이중과세 효과를 100% 해소할 수 있음

- 이중과세 효과의 해소만을 고려하면 법인이 실제 부담세율을 주주에게 알려 주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임
 - 호주, 멕시코 등에서는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세후수익을 재원으로 배당된 배당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세율이 누진체계인 국가에서 이는 과도한 행정비용과 복잡성을 야기한다는 단점이 있음
 - 임퓨테이션 방식을 채택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체계

- 따라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퓨테이션율의 조정을 포함하여, 임퓨테이션 방식 이외 종합과세 내의 부분과세, 명목이자비용공제, 법인세율의 인하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열린 검토가 필요함

-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 조정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이들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1997년에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배당가산액을 산정하여 종합과세자의 경우 이중과세 효과가 완벽히 해소되도록 개정하였음
 - 그러나 분리과세 소액투자자의 세부담률이 종합과세되는 대주주보다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여 1999년에 실제 법인세부담률과 무관한 19%로 개정¹⁰⁹⁾

마. 소득구간별 세부담 비교

-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득의 과세현황을 살펴보았음

109) 김진수(2004), p. 65

- 국세통계연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신고 현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득의 과세 현황,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금융소득규모 별 금융소득 구성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금융소득 과세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의 소득구간별 분포현황 등의 자료 필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전체 납세인원의 약 1.8%이고 전체 이자소득의 약 9%, 배당소득의 약 69%만이 종합과세되고 있음
 - 다수를 차지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외의 자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현황 파악에 애로가 있음
 -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소득의 소득구간 및 과세유형별 분포현황 확인을 통해 금융소득의 실효세율 연구, 비과세·분리 금융상품의 정책실효성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금융소득과 관련된 좀 더 다양한 미시자료가 제공 되는 경우,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현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감사원,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2010년
- 기획재정부·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연구』, 2015
- 김진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12.
- 국세청, 『2016년(2015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16.4.
- 박명호·기은선·정희선,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9.
- 심상동, 「소득세의 이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전문강좌 “분야별 개정세법 및 세무실무 해설 강의” 중 소득세법 관련하여 배포된 강의자료), 강의일자 2016. 10. 6.
- 안종석·전병목,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12.
- 이경근, 「우리나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 시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2016.12.26.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 오윤·문성훈,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Vol. 21, No. 1, 2015.4.
- 오윤·임동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Vol. 14, No. 1, 2013.2.

- 전병목 · 이승식, 『주요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11.
- 조계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의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96.8.10.
- 채은동,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경제현안분석』 제81호, 국회예산정책처, 2013.
- 홍범교 · 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12.
- 홍범교 · 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2.

- Andrew Ainsworth, “Dividend Imputation: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JASSA The Finsia Journal of Applied Finance*, 1, 2016
- An Roinn Airgeadais Department of Finance, “Capital Taxes - Capital Gains Tax and Capital Acquisitions Tax,” 2016.7.19.
- Boris Majcen et al, “Distribution of Personal Income Tax Changes in Slovenia,”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57, 2011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Report of the Technical Committee on Business Taxation*, Ottawa, 1997.
-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2016-17*, 2016
- HM Treasury, *Budget 2010*, 2010.6.
- Michelle Harding, “Taxation of Dividend, Interest, and Capital Gain Income,” Taxation Working Papers, No.19, OECD, 2013.
- Naoki Oka, “Japanese Diet Passes FY 2003 Tax Reform,” *TaxNotes.com*, 2003.
- OECD, *OECD Economic Surveys: Slovenia*, 2009.

Peter Reinar and Christoph Oliver Schmid, "Taxation of Private Investment Income under the Second Business Tax Reform," *Derivatives & Financial Instruments*, IBFD, September/October, 2008

Sebastian Eichfelder & Mona Lau, "Capital Gains Taxes and Asset Prices: The Impact of Tax Awareness and Procrastination," arqus Discussion Paper No. 170, 2014.

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청 국세통계(<http://stats.nt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news.kotra.or.kr/>)

법제처(<http://www.law.go.kr/>)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kr/>)

한국거래소(<http://marketdata.krx.c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

노르웨이 국세청(<http://www.regjeringen.no/>)

노튼 로즈 풀브라이트 법무법인(<http://www.nortonrosefulbright.com/>)

뉴욕타임즈(<http://www.nytimes.com/>)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주일본대사관 (<http://jpn-tokyo.mofat.go.kr/>)

영국 국세청(<https://www.hmrc.gov.uk/>)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

프랙티컬로(<http://us.practicallaw.com/>)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

BLACKROCK(<https://www.blackrock.com/>)

144

E&Y(<http://www.ey.com>)

IBFD(<https://online.ibfd.org/>)

KPMG(<https://home.kpmg.com>)

세법연구 16-05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발 행 2016년 12월 30일
저 자 홍범교 · 구문정 · 홍성희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에스디워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ISBN 978-89-8191-870-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